

우리에게 물어는 봤는가?

학생들이 직접 말하는 학생인권 토론회



일시 2023년 5월 19일(금) 15:00~18:00

장소 국회의원회관 제9간담회의실

주최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득구, 강민정,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

|좌장| **곽노현** _ 前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1부:발제

학생이 바라본 학생인권 | 안병석 _ 서울지역 중학생

학생도 인권의 울타리 안으로 | 김민준 _ 서울지역 고등학생

혁신학교 속 학생자치와 학생인권 | 이강희 _ 충남지역 졸업생

학생인권: 그 이유와 의미, 효능에 관한 개괄적 고찰 | 김경훈 _ 경남지역 고등학생

학생인권을 위한 '근로기준법', 학생인권법이 필요한 이유 | 공현 _ 청소년인권 활동가

2부:토론

장대진 _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

박기남 _ 충남인권교육협의회 공동대표

조정희 _ 국가인권위원회 아동청소년인권과장

하형주 _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인권조사관

이상재 _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인권위원회 위원장

Contents | 목차

인사말

박은경 서울학생인권지킴이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강득구 국회의원
강민정
용혜인

발제

- 발제1. 학생이 바라본 학생인권 • 9
▶ 안병석(서울지역 중학생)
- 발제2. 학생도 인권의 울타리 안으로 • 15
▶ 김민준(서울지역 고등학생)
- 발제3. 혁신학교 속 학생자치와 학생인권 • 19
▶ 이강희(충남지역 졸업생)
- 발제4. 학생인권:그 이유와 의미, 효능에 관한 개괄적 고찰 • 27
▶ 김경훈(경남지역 고등학생)
- 발제5. 학생인권을 위한 '근로기준법', 학생인권법이 필요한 이유 • 55
▶ 공현(청소년인권 활동가)

토론

- 토론1.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현황과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킴이 공동대책위원회'의 대응활동 • 67
▶ 장대진(서울학생인권조례지킴이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
- 토론2.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및 시민사회 대응 현황 • 75
▶ 박기남(충남인권교육협의회 공동대표)

인사말



박은경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킴이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안녕하세요?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킴이 공동대책위원회 상임대표 박은경입니다.

오늘 귀한 시간을 내어 소중한 토론회 자리를 만들어 주신 강득구, 강민정, 용혜인 의원님, 그리고 토론회 내용을 알차게 채워주실 곽노현 전 서울교육감님, 그리고 청소년 학생, 교사,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교육청 관계자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감사 인사를 드리는 마음 한 칸이 편치 않음을 숨기기 어렵습니다.

서울시 학생인권조례를 만들기 위해 10년 전 1년 남짓 학생들의 인권을 지키는 일에 서울시민들이 나서 주실 것을 홍보와 서명 조직을 하느라 거리에서 쏟았던 땀과 열정이 아까워서만이 아닙니다.

그때도 지금도 우리 학생 청소년들의 존엄이 그다지 소중하게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깝기만 합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 학생인권법 제정 운동 등 학생인권 운동으로 체벌과 두발 복장 규제 등 신체적 억압이 다소 줄어드는 등 약간의 변화가 있었다고 하지만, 우리 학생 청소년들은 장시간 학습노동, 성적 경쟁과 스트레스, 그리고 그에 따른 차별 등으로 여전히 행복하지 않은 현실입니다.

따라서, 서울시민이라면 그리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학생들의 인권에 대해 더 많은 관심과 개선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그럼에도, 국민의힘 서울시 의원들만이

아직도 먼 학생인권 현실을 외면하고 그나마 있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겠다고 하니, 역장이 무너져내리는 심정입니다. 그리고, 도무지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만약, 정치적 경쟁자들이 만든 조례라는 단 하나의 이유만으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 하다는 의심이 사실이라면 더욱 더 참담해지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토론회는 이러한 시점에 열리는 안타깝고도 소중한 토론회입니다. 부디, 오늘 토론회에서 들려주는 학생 청소년, 교사, 그리고 국가인권위, 교육청 관계자들의 소중한 경험과 걱정이 큰 울림이 되어 서울시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국민의힘 서울시의원들에게 뉘우침과 깨우침을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이 소중한 토론회를 만들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늘 서울교육과 학생인권을 지키느라 애를 써주시는 서울교육단체 협의회 대표님들과 서울학생 인권지킴이 공대위 동지들께 머리숙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19일

서울학생인권지킴이공동대책위원회 공동대표 **박은경**

인사말



강득구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십니까?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안양 만안구 출신 국회의원 강득구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말하는 학생인권 토론회를 함께 개최하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토론회를 준비해주신 강민정 의원님과, 함께 주최해주신 용혜인 의원님, 그리고 서울 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및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교교육과정에서 학생의 존엄·가치·자유·권리가 보장되고 실현될 수 있도록 각 교육청에서 제정했습니다. 지난 2010년, 경기도교육청을 시작으로, 일부 교육청 등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일부 지방정부와 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축소·폐지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일부 학생인권위원회에서는 이는 인권적 가치를 실현하려는 우리 사회 움직임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토론회의 부제인 ‘우리에게 물어는 봤는가?’라는 질문이 깊이 와닿습니다. 당사자인 학생들의 다양한 생각을 직접 들어보고 논의해, 충분한 숙의과정을 거쳐서 사회적 공론화가 되었는지 객관적으로 진단해야 하는 시점입니다. 또한, 지난 10여 년 동안, 학생인권조례가 현장에서 어떻게 시행되었는지, 학생 인권 신장에 어떠한 기여가 있었는지, 부작용은 없었는지 등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양한 목소리를 내기 위해, 오늘 토론회에 많은 학생 여러분들께서 참석해주셨습니다. 학생이 직접 경험한 학생인권에 대해 다섯 분의 발제자 분들, 그리고 학생 인권과 관련된 업무 및 역할을 담당하시는 각계각층의 전문가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와중에도 좌장을 맡아주신 곽노현 전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의 허심탄회한 논의를 통해 지혜를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 역시도 오늘 토론회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제언을 의정활동에 반영해서 제도적 뒷받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3년 5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 득 구**

인사말



강민정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입니다.

〈우리에게 물어는 봤는가? 학생들이 직접 말하는 학생인권 토론회〉 개최를 진심으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오늘 토론회를 함께 뜻을 모아 준비해 주신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킴이 공동대책위원회와 강득구 의원님, 용혜인 의원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좌장으로 오신 광노현 전 서울시교육청 교육감님과 오늘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전해주기 위해 먼 길 마다 앓고 발걸음 해주신 발제자분들과 토론자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대한민국 헌법과 교육기본법, 초·중등교육법 그리고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는 학생은 인간으로서 존엄한 가치를 실현하고 자유롭고 행복한 삶을 영위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에 2010년 경기도를 시작으로 6개의 교육청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여 지난 10년간 학생들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학생들이 민주시민으로 성장케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러나 최근 전국적으로 정권이 바뀌면서 지방정부와 의회는 일부 종교단체와보수단체들을 앞세워 성 소수자에 대한 혐오와 공격을 하며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이 침해당할 위험이 높은 인권의 항목들을 명확히 해왔고 학교 현장의 인권문화 증진, 인권교육 촉진 등을 통해 인권침해를 예방하고, 심각한 인권침해 사안에 대해서는 구제할 수 있도록 기능해 왔습니다.

실제로 서울시교육청이 2015년 조사한 ‘제1차 학생인권 실태조사’와 2019년 조사한 ‘제2차 학생인권 실태조사’를 비교해 보면 학생들이 체감하는 인권보호 효능감은 64.2%에서 70.7%로 증가하였고, 학교 규칙·규정 제·개정시 학생의견 반영 비율은 67.3%에서 86.5%로 증가했습니다.

이런 학생인권조례가 폐지 위기에 놓였습니다. 특히 문제인 것은, 정작 이해당사자인 학생들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학생들이 직접 나서서 스스로들이 원하는 인권에 대해 우리 사회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학생들의 의견은 듣지 않은 채 폐지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학교 현장에서 학생인권이 어떻게 보호되고 있는지, 일부 세력이 혐오로 조장하는 것들이 학교에서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누구보다 당사자만큼 잘 아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학생들의 생각을 듣고 조례 차원을 넘어 더 보편적인 학생인권의 보장이 어떻게 이루어 질 수 있는지 시민단체와 교육관계자들 그리고 우리 모두가 함께 지혜를 모으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학생들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학생인권이 더욱 튼튼하게 보호되는 사회를 만들도록 앞장서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분께 다시한번 감사드립니다.

2023년 5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민정**

인사말



용혜인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기본소득당 국회의원 용혜인입니다.

오늘 날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움직임이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학생의 인권을 지키는 것은 물론이고, 교사와 시민들에게도 학생인권의 중요성을 확인시키는 매우 중요한 조례입니다. 하지만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 및 학부모 단체들은 ‘동성애 조장’과 같이 말도 안되는 이유를 들먹이며 조례의 효력을 무력화하고자 하는 시도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조례는 UN아동권리협약에 근거한 조례이자, 이미 그동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행정법원 등에서 정당성을 확인 받기도 했습니다. 또한, 유엔 인권이사회(HRC)는 최근 우리 사회의 학생인권조례 폐지 움직임에 대해 국제 원칙을 어기는 시도라며 한국 정부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수도권 서울특별시의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다른 지자체의 학생인권조례에 까지 영향이 갈 것을 우려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여전히 교육 현장에서는 학교폭력, 스쿨미투 등이 반복되고 있고, 다양한 학생 차별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학생의 인권침해에 대한 최소한의 구제책을 규정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가 절대로 사라져서는 안되는 이유입니다. 특히 구체적인 차별 사유를 명시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교육현장에서부터 차별과 인권에 대한 감수성을 키워나갈 책임을 부여합니다.

모든 학생은 존재만으로도 존엄한 인간이자, 교사, 학부모와 같이 동등한 학교의 구성원입니다.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퇴행이 반복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오늘 토론회는 직접 학생들이 발제하고 목소리를 낸다는 점에서 더욱 뜻 깊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함께 주최해주신 모든 의원님들과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그리고 귀한 시간 내어 의미있는 발표와 토론을 진행해주신 모든 발표자 및 토론자분들, 그리고 좌장을 맡아주신 광노현 서울특별시 전 교육감님께 감사인사드립니다.

저 역시 국회에서 학생인권을 위협하는 퇴행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교육현장의 모든 구성원이 평등한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3년 5월 19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용 혜 인**



발 제
01

학생이 바라본 학생인권

▶ 안병석(서울지역 중학생)



학생이 바라본 학생인권

안병석

(서울지역 중학생)

학생이 바라본 학생인권이 뭘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안 지켜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게 확실히 지켜졌다면 청소년 인권 운동 단체들이 없었겠죠?

솔직히 이 주제를 얘기하면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작년이었고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친하던 3학년 선배한테 고백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당시 제가 A라는 방역지도사 선생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그게 어느 순간 담임선생님 귀에 들어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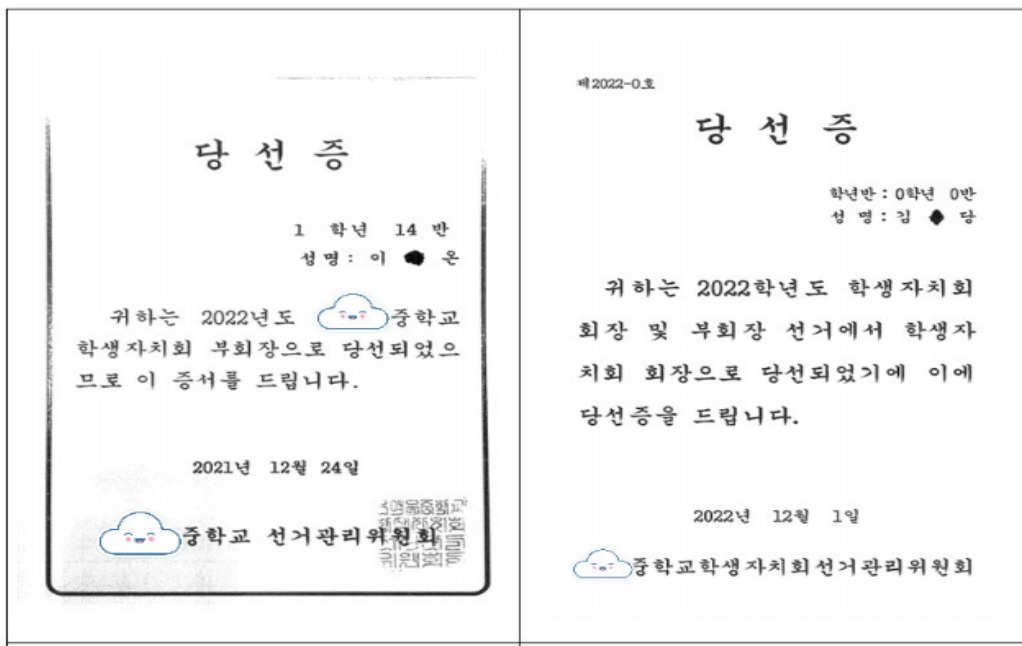
(출처 : 늘봄초등학교 사이트)

그래서 그날 방과후에 위에 사진 같은 장소에서 얘기를 하였습니다. 담임선생님은 “네가 그걸(대화 내용)보여주기 전까지 집에 안 보낼거라”고 말씀 하면서 제가 대화 내용을 보여주기 싫다고 하자 부모님 통해서 들을 수 있다면서 빨리 말 하라고 강요하고 1시간 30분을 교무실에서 선생님과 실랑이 하였습니다.

이때 인권위는 알고 있었는데 솔직히 진정 넣기도 눈치 보였습니다. 그리고 학생인권조례를 알았다면, 여러 인권 단체를 알았다면 선생님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실제로 많은 학교에서 교칙으로 학생들의 연애, 두발의 자유, 복장의 자유 등을 강제로 침해합니다.

추가로 요즘 제가 진지하게 고민하는 건데 학생들이 학급회장, 전교회장등을 뽑을 때 국회의원처럼 당선증이 아닌 임명장을 주는 걸까입니다. 실제 일부 학교에서는 당선증을 주지만 많은 학교는 임명장을 줍니다. 저는 이 부분 또한 학생들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초중고 학생회장 선출한 뒤
 옛 규정 탓 임명장 수여 많아
 "당선증이 학생 자치에 부합"
 전북교육청에선 변화 움직임



일부 학교에서 사용 중인 학생회 임원 '당선증'. 민형배 의원실 제공

'학생들이 투표해서 학생회장을 뽑는데 왜 교장 선생님 도장이 찍힌 임명장을 줄까?' 전남 강진군에 사는 중학교 3학년 정세희(15)양은 지난해 11월 학생회장에 당선된 뒤 교장 명의의 '임명장'을 받고 의문이 들었다. 정양은 "학생들이 뽑았으니 학생회든 학생들의 이름으로 된 뭔가를 줘야 하지 않나라고 생각했다. '당선증'을 주는 게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현재 학생회 집행부 활동 중인 중학교 2학년 안병석(14·서울 동대문구)군도 지난해 이런 취지로 교무실에서 건의를 하기도 했다. 안군은 "그때도 (선생님들이) 바뀐다고 말씀은 했는데, 1년 반정도 지났지만 바뀐 게 없다"고 말했다.

https://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1061186.html(한겨레)

또한 교사에게 잘 보여야 되는 이유는 상벌점제, 생기부 등이 있습니다. 생기부는 그렇다치고 상벌점제는 교사가 남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작년에 상점 15점에 벌점 21점을(ㅋㅋㅋㅋ) 받았습니다. 다행히 '상점1- 벌점1=0' 이라, 선도위원회는 열리지 않는 것입니다. 저는 1학년 때 생활평점가산점을 받은 모범생이었는데 2학년 때 벌점 받은 기록을 보고 진짜 의아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교사에게 학생으로서 인권침해와 부당하다고 느낀 점을 말하면 교사지시 불이행, 교사에 대한 불손한 태도, 기타 등으로 벌점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저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축소 시도를 반대 하며 동시에 각 학교마다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하는 교칙을 조사하여 폐지하도록 교육청이 앞장서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교사의 기분을 맞춰야지만 벌점을 안 받는 상벌점제를 폐지해야 하며 학생인권조례에 대해 더욱 많은 홍보와 학생들에게 인권 수업을 반드시 필수로 해야 한다 생각합니다.

저는 현재 중학교 3학년으로 전국의 학생들과 '전국학생협회'를 2022년 만들어 서울지부장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월 26일 출범한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킴이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에 공동 상임대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학생인권을 폐지하자는 사람들에 맞서 저희 서울지부 활동가 학생들과 학교와 거리에서 학생인권의 중요함을 알리는 활동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태어나 처음으로 EBS 방송에 출연해 학생인권의 필요성을 인터뷰했고 공대위 기자회견 등에 참여했습니다. 또한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해 청소년 인권행동 아수나로에서 만든 전단지들 대자보처럼 제가 다니고 있는 학교 게시판에 붙여두었습니다. 징계를 각오하고 부착을 했는데 딱히 징계는 없었고 아직까지 잘 붙어 있습니다.



저의 이런 활동을 보고 어느 선생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고 세상을 바꾸려면 여기서 대자보 붙이고 활동할게 아니라 공부를 해서 SKY(서울, 고려, 연대)를 졸업해야 뜬다.“ 라고....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보니 무조건 좋은 대학교를 졸업해서 이슈가 되고 무조건 좋은 학교를 나와야만 투쟁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공대위에서는 5월 5일 어린이날을 맞아 금천구에서 학생인권조례지키기 서명전을 학생과 시민들에게 받았습니다. 또한 5월 7일, 처음이긴 하였지만 ‘전국학생협회 서울지부’ 주최로 시민과 학생들 서명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하루이지만 ‘10명이라도 채우자’라는 생각으로 거리에 나왔습니다. 서명 받는 것은 쉽지 않았습니다. 그냥 지나쳐가는 시민들, 외면하는 시민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다고 학생인권이 지켜지나, 이런다고 누가 알아주거나 할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제 생각에 반박이라도 하듯 시민들이 오셔서 서명해주시고 응원해 주었습니다. 어느덧 끝 날 때가 되니 60명이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의원님들, 기자님들, 활동가님들한테 서명운동을 알려주시고 같이 해달라고 요청 드리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마디만 하고 싶습니다.

아래 사진을 보시면 유독 어려보이는 동지가 있습니다. 이름은 언급하지 않겠지만 경기도에 거주하는 초등학교 5학년입니다. 요즘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서울학생인권조례에 대해 관심 가져주고 관련 활동에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솔직히 전 이 동지를 보고 미안했습니다. 당연한 것을 지키지 못해 왕복 3시간 거리를 다니게 하기 때문입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는 학생들한테 없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한테 요청 드립니다. 서울 학생인권조례를 지키기 위한 활동에 동참해주시고 홍보해주시고 연대해주세요. 감사합니다.





발 제
02

학생도 인권의 울타리 안으로

▶ 김민준(서울지역 고등학생)



학생도 인권의 울타리 안으로

김민준

(서울지역 고등학생)

우선 제 입장을 밝히겠습니다. 한 학생으로서, 한 국민으로서, 또 한 인격체로서, 현재 논의가 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폐지로 인하여 그동안 진일보하였던 학생 인권의 후퇴가 예상되는 상황 속에서 우려의 목소리를 낼 수밖에 없어 이 자리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가, 이 문제가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는데 한 역할을 하길 바랍니다.

학생 인권의 중요성을 말하기 위해서 저희 학교 경험을 이야기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는 서울시 강동구에 있는 혁신학교로써 학생인권조례를 충실히 이해하는 학교입니다. 그러한 학교의 의지는 교가에 담겨 있고, 실천은 수많은 것들이 있지만 두 가지를 뽑아보자면 학생의 의상과 두발의 자율화, 3주체 생활협약입니다.

먼저, 학생 의상과 두발의 자율화는 말 그대로 학생이 학교생활 속에서 교복만이 아닌 다른 의상과 자유로운 헤어스타일을 허용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 학생이 학생답지 못하다고 반대하는 의견이 있을지 몰라도 저는 각각의 학생의 개성을 존중해주는 것 같아 매우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3주체 생활협약은 학생, 교사, 학부모, 세 주체가 서로를 존중하고 학교운영에 다 함께 동등한 위치에서 참여하는 것입니다. 특히 학생과 교사의 벽을 허문다는 내용이 교가에 반영에 될 정도로 선생님들은 학생을 최대한 동등한 위치에서 이해해 주시려는 노력을 하였고 이 덕분에 저희 학교에서는 많은 선생님들이 권위를 내세우기보다 격의 없이 학생들과 지내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교우 관계가 더욱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또한 학생이 학교운영에 보다 주도적으로 참여함으로써 학교의 다양한 활동들이 학생들의 의견에 잘 부합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결국 학생인권조례로 인하여 학교생활이 혼란스럽고 어지러워지는 것이 아니라 보다 민주적인 학교생활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학교의 좋은 모습들이 우리나라의 많은 학교들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러한 모습에 대해 사회에서는 안 좋게 보는 부분이 있습니다. 교육이 충실하게 이행되지 못한다든지, 학생의 자유를 과도하게 허용한다든지, 학교 내의 모습을 혼란스럽게

만든다든지 등등 학생인권조례가 학교와 교육에 미칠 악영향을 추정함으로써 학생인권조례의 폐지를 주장합니다. 저도 폐지를 주장하는 측이 말하는 영향에 대해 과도하다고 생각하지만 일부는 긍정합니다. 그러나 그 부분은 인권조례에 본질적인 내용에 의한 것이 아닌 그 인권조례를 현장에 적용할 때에 생기는 영향인 것 같습니다. 즉 학생인권조례의 근간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러한 영향이 생겼다 하더라도 학생인권조례를 무작정 폐지하는 것은 옳바르지 않을뿐더러 해결책이 되지도 못합니다.

예를 들어 학생인권조례가 보장하는 과도한 학생의 인권으로 교권이 실추되었다고 한다면 (저는 교권과 학생의 인권의 관계가 제로섬 게임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교권 강화에 대한 규정을 추가한다는 식으로 수정을 해 나가야 할 부분이지 교권이 침해되니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자라는 식의 논리는 마치 흰 종이에 흑연이 묻었다고 하여 아예 종이를 불태워버리는 식의 논리입니다. 그저 지우개로 지우면 되지 않겠습니까? 따라서 학생인권조례는 폐지할 때 얻는 이익보다 폐지할 때 학생인권 보장의 불확실성이라는 손해가 압도적으로 큼으로 폐지해서는 안 됩니다.

학생인권 보장이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를 말씀드리기 전에 역으로 묻고 싶습니다. 왜? 학생인권 보장이 이루어지지 않아도 됩니까? 보통의 생각은, 학생은 성인에 비해 성숙하지 못함으로 성인과 같은 인권을 누리게 된다면 옳바르게 자리지 못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것입니다. 근데 그 옳바르게 자란다는 것에 정확한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저 학생들은 어른들의 말을 아무 의심 없이, 군말 없이 듣고 공부만 하면 되는 어른들의 통제 안에 있는 것이라면, 그것은 학생을 그저 자원으로 밖에 취급하지 않는 구시대적인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입니다.

우리 학생들은 사회의 하나의 부속품으로 취급받는 것이 아닌 우리의 뜻을 펼칠 수 있는 인격체로서 존중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한 방향이 역사가 발전하는 방향이고 민주화 이후에 당연한 흐름일 것입니다. 저희는 역사를 거꾸로 돌이키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되고, 그러하기에 우리는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아니라 더 강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나아가 학생인권보장이 조례로만 남아있어 정권이 바뀔 때마다 흔들리는 현재의 불안정한 상황에 머물러 있는 것을 넘어서 법제화하여 학생인권을 안정적으로 보장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저희 학생들이 사회로 나아가 사회의 구성원으로 있을 때까지 교육의 목적은 단순히 국영수사과를 주입시키는 것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학생에게 인권에 대한 올바른 인식 확립과 올바른 경험의 누적까지 아울러야 할 것입니다. 그리하여 학생들이 이러한 교육을 받고 사회에 진출하여 민주사회의 일원이 된다면 우리 사회는 더욱 더 개인의 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사회가 되어가고 그러한 길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발전이고 사회의 발전일 것입니다. 이러한 점들을 보았을 때 사회는 학생에게 인권의 울타리를 열어줌으로써 학생 또한 여타 사회 구성원과 같이 있을 수 있는 도약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발 제
03

혁신학교 속 학생자치와 학생인권

▶ 이강희(충남지역 졸업생)



혁신학교 속 학생자치와 학생인권

이강희

(충남지역 졸업생)

I 서론

학생의 권리라는 말을 처음 들었을 때 관심도 없었고 나에게 도움이 되기는 하는 건가라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러다 혁신학교를 오게 되고 학교생활을 하게 되면서 직접 보고 느끼면서 많은 생각이 들었고 학생의 권리는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관심도 없었고 활동도 안했다면 지금 어떻게 변화가 되었을지 모르겠지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생이 된 시점으로 보면 그때 많은 활동을 하고 경험이 중요하다는 말을 이제야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후배들도 여러 활동을 하며 본인 스스로 직접 느끼고 성장하면서 알찬 학교생활을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박정식 충남도의원(국민의힘·아산 3)은 도의회 제339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된 2020년 충남지역 교원 상담 및 법률지원 통계가 3년 전인 2017년과 비교해 158% 증가했다"면서 "이는 전국 평균 34%가 증가한 것과 비교하면 증가폭이 너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조례가 책임이나 의무 없이 학생들의 권리만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폐지 또는 개정돼야 한다"며 "폐지·개정을 반대하는 단체나 개인이 있다고 해도 뜻을 강하게 밀고 나갈 예정"이라고 폐지·개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고등학교 졸업생으로 혁신학교에서 어떻게 생활을 해왔으며 학생의 인권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고 학생 인권은 왜 중요한지에 대해 경험을 토대로 말하고자 합니다. 또한, 이후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고 그러한 노력은 학생들에게 어떠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설명하고자 합니다.

II 혁신학교를 다니면서

1. 학생자치활동 (학생회)

- 학생들이 직접 참여하여 만드는 학생인권보호 규칙

평소 저는 학생 인권에 대해 잘 알지 못하였으며 학생에 관련된 규정 사항들도 선생님들께서 학생들을 지도하실 때 필요한 정해진 규칙과 같은 것이라고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학생회 활동을 하게 되면서 처음으로 참여한 회의가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해주기 위해 학칙 조항을 어떻게 바꿔야 좋을지에 대한 회의였습니다. 회의 할 때에 선생님들께서는 계속해서 학생들의 의견은 어떠한지 궁금하다고 하셨으며 조항을 바꿀 때 지금 이 조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와 선생님들께서 바꾸고 싶은 부분을 설명해주시면서 이런 식으로 바꾸는 것은 어떤지를 하나하나 물어봐주셨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혁신학교는 정말 우리의 이야기를 반영한다는 생각을 가지게 해주었습니다. 2학년이 되고 전교회장선거 준비를 하면서 어떠한 공약이 좋을지 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때, 한 선생님께서 1학년 때 교복에 관한 규정을 바꿨지만 계속해서 교복을 안입고 다니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다고 하시며 교복자율화를 공약으로 추천해주셨습니다. 교복자율화를 하게 되면 학생들은 본인이 입고 싶은 옷을 마음대로 입을 수 있고 선생님들께서는 아침마다 힘들게 학생들을 잡을 이유도 없다고 생각하여 공약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공약을 지키기 위해 학칙 개정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고 개정 동의 여부 설문조사에서 76퍼센트의 응답률을 받게 되어 그 의견을 바탕으로 기존 생활 규정 내용을 수정하여 위원회 개최를 요청하였습니다. 원활하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했던 것과는 달리 고난이 연달아 찾아왔습니다. 학부모님들은 ‘올바른 복장’, ‘아름다움’과 같은 추상적 표현을 지적하시며 착용이 불가능한 복장 범주를 정한 세부적인 조항을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위원회에서는 세부적인 조항은 선생님들께서 학생지도를 하실 때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말씀하시며 반대하셨습니다. 진전이 없자 학생들은 언제쯤 교복을 편하게 입을 수 있다는 건지 계속해서 물어봤고 이러다 교복 자율화를 하지 못하겠다는 생각에 초조해갔습니다. 그래서 학생회 안에서 학생 인권에 관심이 많은 학생 2~3명을 뽑아 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조직하여 우려되는 사항에 대한 표본을 마련하였으며 추후 조정할 수 있게 한다는 조항을 제안했고 모든 주체의 지지를 받아 개정에 이르렀습니다. 학생인권심의위원회의 활동이 할 때에, 쉬는 시간과 수업 중간에도 계속해서 회의를 하러 가기도 해서 다른 학생들에게 피해를 준 부분도 있지만 선생님들과 학생들 모두 이해해주며 개정이 제발 바뀌었으면 좋겠다고 격려도 해주었습니다. 또한, 규정을 제한하는 기간 동안에는 선생님들께서도 학생들이 교복이 아닌 편한 복장으로 등교를 해도 뭐라고 하지

않으셔서 자율복을 입고 등교하는 학생이 많아졌습니다. 1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총 3회를 걸친 위원회, 수많은 의견 수렴, 공청회, 학생회 회의 등 험난한 과정이었습니다. 개정을 바꾸기 위해 했던 많은 노력들이 헛되이 되지 않아 다행이라 생각하고 노력한 많은 편한 복장을 마음 편히 입고 다닐 수 있도록 되어 학생들이 가지고 있는 불편함을 해결해줄 수 있던 것 같아 뿌듯했습니다.

〈 그림 1 〉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제9조【개성을 실현할 권리】 학생은 두발 등 용모와 복장에 있어 자신의 개성을 실현할 권리를 가진다. 다만 **학생인권심의위원회(학생, 학부모, 교사)가 교육목적상 필요하다고 합의한 경우 권리를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22. 4. 13.〉

자료 : 천안신당고등학교

- 편한 장소 제공을 위한 공간혁신

충남 학생인권조례 제 27조 1항에는 ‘학생은 휴식과 문화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와 문화공간을 제공받을 권리를 가진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저희학교에서 학생들이 자유롭게 설 수 있고 참여 수업 공간으로도 활용되던 공간이 있었습니다. 이 공간은 선배들이 직접 참여하여 우리가 필요한 공간은 무엇일까 고민해보고 의견을 모아 만들어진 공간입니다. 저는 평소 건축에 관심이 있어 자율동아리로 건축동아리에 들어가 활동했는데 담당선생님께서 학생회 임원 몇 명과 같이 올해 공간혁신사업 회의에 참여해보라고 지원해주셨고 회의에서 공간별로 학생들이 생활 할 때 불편했던 점은 무엇이고 그 부분은 어떻게 하여 개선할 수 있을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이때 학생들에게는 공부를 하는 공간도 필요하지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다 생각하였습니다. 하지만 선배들이 만들어두신 공간을 보았을 때에도 학생들의 휴식을 위해 만든 것 같다는 느낌이 컸지만 학생들이 이러한 공간이 있는지 모르는 학생도 많았으며 학생들이 쓰레기를 버리고 물건 관리가 잘 되지 않아 공간 활용이 잘되지 않았던 것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 그림 2 〉 도서관과 감성공간



자료 : 금강일보

- 학업 스트레스로 인해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는 학교 행사

저희 학교에서는 5월달에는 운동회, 12월달에는 축제를 진행하였습니다. 학생회에서 주최하여 하는 행사인 만큼 선생님들께서는 학생회가 주도하여 행사프로그램을 정해오라고 하셨습니다. 학생회 안에는 문화체육부라고 하여 행사가 있을 때 먼저 나서서 일을 하는 친구들이 있었지만 그 친구들은 선생님들과 회의를 할 때 의견을 전달하였고 나머지는 모두 학생회 회의를 통해 결정하였습니다. 운동회 때에는 시간별로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경기를 준비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체육 담당선생님과 어떤 경기에는 어떤 선생님이 관리하고 하루 동안의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 저희가 담당하고 조율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들의 일정을 저희가 결정하는 과정이 어색했지만 선생님들께서는 본인이 맡은 일이라고 편하게 생각하라고 하시면서 저희가 정한 일정을 최대한 맞춰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운동회를 할 때 반별로 반티를 맞춰입었는데 다른 반과는 겹치지 않아야 한다며 반장끼리 모여 반티를 정하는 회의도 하였습니다. 공평하게 제비뽑기로 진행하였으며 학생들 모두 제비뽑기에 찬성하였습니다. 그래서 반티를 첫 번째 반부터 마지막 반까지 정할 때 앞에서 원하는 반티가 정해졌으면 뒷반은 그 디자인을 제외하고 정하면서 싸움이 일어날 일 자체를 방지했습니다. 축제 때에는 반마다 부스를 운영하고,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공연에 참여하여 무대에 올라가서 춤과 노래를 하는 학생들도 있었습니다. 공연을 하지 않는 학생들의 의견을 모아 1~3등을 정해 상품을 주는 활동도 하였는데 그 자리에서 바로 온라인 투표를 진행했습니다. 또한, 선생님들도 공연에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어떤 선생님인지 맞추는 이벤트도 하였습니다. 운동회와 축제를 준비할 때에는 선생님들과 원하는 경기가 다르거나 인원 제한에 대한 의견이 충돌한 부분도 있었고 학생 관리 자체가 힘들어서 많이 지쳤었는데 다시 돌아보니 그때 학생들도 최대한 학생회를 생각해 서로서로 배려해주었고 선생님들께서도 저희가 힘들지 않게 의견을 반대하셨고 행사를 할 때마다 적극 지원해주신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2. 학생자치법정

사회과목을 담당하셨던 선생님 중 한 분께서 학생자치법정을 만들어 학생선도위원회에 가기 전 단계 하나로 학생자치법정을 만드셨습니다. 학교규정을 잘 지키지 않아 벌점이 많이 쌓인 학생이 이 활동에 참여하면 본인이 왜 벌점을 받았는지 밝히고 그 의견을 가지고 판사와 검사, 변호사의 역할을 가진 학생들이 각자 본인의 역할을 맡은 그 학생에서 벌을 주는 활동이었습니다. 판사와 검사, 변호사를 맡은 학생들은 면접을 통해 결정되고 저는 판사로 활동에 임하였습니다. 활동을 하면서 그 학생이 타당하게 벌점을 받았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며 학교의 규정이 잘 되어있나 의심을 가지기도 하였으며 규정이 잘 되어있다 하더라도 학생들이 몰랐다 하더라도 이러한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결을 해야할지 막막하기도 했습니다.

III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1.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 상황

학생인권조례는 2010년 10월 5일 경기도교육청이 가장 먼저 공포한 이후 광주, 서울, 전북 교육청 등 4개의 지역에서 이를 공포해 시행중입니다. 학생인권조례는 차별받지 않을 권리, 폭력 및 위협으로부터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및 정보의 권리, 양심과 종교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 자치 및 참여의 권리, 소수자 학생의 권리 보장 등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인권 침해를 당한 학생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구제신청을 할 수 있고, 인권 침해나 차별행위가 있었다고 판단되면 가해자·관계자·교육감 등에게 인권 침해 행위 중지 등 필요한 구제조치를 취합니다. 하지만 제정 3년만에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으며 다시 되돌아가자고 말하고 있습니다.

2.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한 생각

우선 저의 입장은 학생인권조례는 폐지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은 학생으로써의 권리가 있는 것이 당연하며 학생들 인권을 보호해 줄 유일한 것이 바로 학생인권조례입니다. 학생인권조례 제정 이후 저희학교 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의 학생생활규정이 그나마 학교를 직접 다니고 있는 학생들의 의견이 반영되면서 정말 학생이 지킬 수 있도록 바뀌게 되었고,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해주며 창의적이고 주도적인 학습능력을 키울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유롭고 행복하게 살아야한다면 학생들의 권리를 억압하는 것은 옳바르지 못한 행동입니다. 교복, 두발, 화장, 피어싱, 연애에 대한 자유가 생기며 딱기는 와이셔츠에 넥타이, 짧은 치마는 없어지고 알록달록한 머리는 늘어나는 등 학생들의 개성을 표현할 수 있게 하였고 학생들의 편의를 생각해준다는 방향으로 개선되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와 다르게 처벌에 관한 이야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 초등학생, 중학생 때까지만 해도 숙제를 안해오면 회초리로 맞거나 숙제를 다 할 때까지 집에 안보내는 식으로 체벌을 할 수 있었지만 현재로는 법적 소송이 가능하며 사라졌습니다. 이렇듯 대중의 인식변화로 학생들의 꿈을 펼칠 수 있는 활동과 시간을 제공해주며 학생들의 생각에 제한을 두지 않는 많은 사례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인권조례에 명시된 내용을 보면 학생들에게 꼭 필요한 내용들이며 인간의 권리로서도 기본적인 사실입니다.

IV 학생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고등학교를 다니며 여러가지 활동을 해오고 그 안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해준다는 느낌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특히 학생자치활동을 할 때 선생님들께서도 학생들을 위해 노력하고 계시구나라는 생각이 들게 해주셨고 그로 인해 저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의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안에서 공동체의 의사결정과정 참여와 자신이 직접 공동체를 만들어간다는데 큰 책임감을 느끼며, 우리는 민주주의를 배우고 더 성숙한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는 동안은 학생들을 위한 권리가 있는 것이 마땅하며 학생들의 의견을 전달하여 실천할 수 있는 부분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학신학교와 학생자치활동의 발전을 위해 일하는 ‘까지’ 활동도 하고 있습니다. ‘까지’에서는 우리가 경험한 학교 이야기를 하며 대외적으로 교육 혁신 관련 정책의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도움이 될 만한 활동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학생인권을 보호받는 학교문화 속에서 살아온 저는 여러 사람을 위해 일하는 공무원이 되기로 마음을 먹었으며 행정을 배우고 있고, 대학교 뿐만 아니라 사회에 나가서도 인권을 소중히 하며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을 위해 일할 것입니다.

발 제
04

학생인권:그 이유와 의미,
효능에 관한 개괄적 고찰

▶ 김경훈(경남지역 고등학생)

학생인권: 그 이유와 의미, 효능에 관한 개괄적 고찰

: 김경훈 (정부 청소년특별회의 부의장, 마산가포고 3)

| | | |
|-----|-----------------------|-----------------------------------------------------------------------------------------------------------------------------------------------------------------------------------------------------------------------|
| I | '학생인권' 개념의 당위성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학생인권의 요청 ② 학생인권의 당위성 ③ 학생인권의 접근 |
| II | 학생인권 보장 장치의 필요성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시대적 인식과 인권의 제도적 보장 ② 학생인권 보장 장치의 기능 |
| III | 학생인권에 관한 오해와 진실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교권과의 충돌: 학생인권이 증진되면 교권이 '추락'하는가? ② 성적 저하: 학생인권은 학생에게서 배움을 뺏어가는가? ③ 소년범죄율 상승 및 학교폭력 증가: '무법천지'의 도래? ④ 법원칙과의 충돌: 학생인권은 조례를 통해 보장할 수 없는가? |
| IV | 결론 및 제언 |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패러다임의 전환 - 미래세대에서 '현재세대'로 ②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강화 - 주체적 이해와 능동적 실행 ③ 학생인권 보장 장치의 구축성 강화 ④ 학생인권 보장 및 사회적 지위 강화의 국가사무화 |



학생인권 개념의 당위성 분석

1. 학생인권의 요청
2. 학생인권의 당위성
3. 학생인권의 접근

학생인권: 그 이유와 의미, 효능에 관한 개괄적 고찰 (김경훈)

3

1 학생인권의 요청

근대 시민 국가: 정치권력의 자의적 침해로부터의 자유

현대 자본 국가: 정치권력의 자의적 침해로부터의 자유
+ 사회계급·세력 간의 갈등에서의 자유와 안전

경직된 사회제도, 학교(력)제도, 가족구조 등

• 연령주의(Ageism):

- 연대기적 연령을 바탕으로 사회가 특정의 연령집단으로부터 그 사회의 기회와 자원을 의도적으로 배제시켜버리는 장치를 제공
- 결과적으로 성차별주의(Sexism)나 인종차별주의(Racism)와 마찬가지로 사회적 불평등을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로 기능하게 하는 것 (Bytheway, 1995)

학생인권: 그 이유와 의미, 효능에 관한 개괄적 고찰 (김경훈)

4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권리

+

교육에 관한 특수한 권리

김혜숙 (1999) - 소극적 자유권(체벌, 폭력, 성폭력, 방임, 유기로부터의 자유), 적극적 자유권(학문, 의사표현, 교육내용 선택 등의 자유), 평등권, 복지권

심성보 (2002) - 인간으로서의 권리(자치권, 사생활 보호의 권리, 적법절차에 의해 보호받을 권리 등) + 교육 받을 권리(차별없는 기회 제공권, 교육환경의 정비 요구권, 유의미한 교육을 받을 권리, 평등하게 교육 기회에 접근할 수 있는 권리, 교육내용의 선택, 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 등)

학생인권: 그 이유와 의미, 효능에 관한 개괄적 고찰 (김경훈)

5

2 학생인권의 당위성

발달과정의 지위적 특수성

- 학생은 신체·정신·사회적으로 성장하고 발전하는 단계로서, 다른 사회적 주체들에 비해 보호와 돌봄이 더욱 필요한 특수 집단
- 인권과 복지 → 교육을 수행하며 건강하게 성장 → 헌법의 전제가 되는 인간상 실현

우리 헌법의 전제가 되는 인간상은 ‘스스로 선택한 인생관과 사회관을 바탕으로 사회공동체 안에서 각자의 생활을 자신의 책임 아래 스스로 결정하는 성숙한 민주시민’
(헌재 2017헌바127)

학생인권: 그 이유와 의미, 효능에 관한 개괄적 고찰 (김경훈)

6

- 이는 아동인권에 관한 국제인권 규범에서도 드러남. Interest(이익보호)의 법리는 공통적이라고 할 수 있으나, Best Interest(최선의 이익) 법리가 명문으로 인용되고 있는 국제인권협약은 아동권리협약이 대표적이고, 거의 유일 (이경은, 2016)

In all actions concerning children, whether undertaken by public or private social welfare institutions, court of law, administrative authorities or legislative bodies, the best interests of the child shall be a primary consideration.

공공 또는 민간 사회복지기관, 법원, 행정당국, 또는 입법기관 등에 의하여 실시되는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 최선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UN 아동권리협약 제3조 제1항)

교육목적의 실현

- 인권의 부재 상황(교사나 학교의 권위가 남용되거나 학업 또는 학교 생활에 대한 차별이 발생하는 등) → 학생의 자기존중감 훼손, 학습동기 저하
- 인권 보장 및 학생 자율성 지지의 수준과 학습동기·학업성취도 수준은 일정 수준까지 정비례 (박은희, 2019 등)
- 학생에게 있어 인권침해의 수준과 자아존중감, 성장 마인드셋, 그릿*은 반비례 (이창식 외, 2017)

• 장기적 목표를 위한 인내와 열정(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 Duckworth 외 (2007)

- 특히 초등학교 정도 나이대의 아동에서, 교사의 인권 존중 및 구조 제공의 정도가 높고 학생과 교사 간 갈등이 없을수록 언어, 읽기 및 쓰기 능력 및 사회적 감정 발달이 고수준에 위치 (Cen Wang 외, 2018)

Table III. Within-group comparisons of teacher-child conflict trajectory classes on school academic and social-emotional outcomes.

| | Conflict | | | | | | | | | | | | | | | |
|-------------------------|-------------------------------------------|---------------------|-----------------|------------|----------|----|--------|-------------------------------|--------------------------------|---------------------|-----------------|----------|-------|---|------------------|----------------|
| | Children with speech and language concern | | | | | | | Typically developing children | | | | | | | | |
| | 1 | 2 | 3 | 4 | χ^2 | df | p | Class comparison | 1 | 2 | 3 | 4 | | | | |
| Low stable | Moderate increasing-decreasing | Moderate increasing | High decreasing | Low stable | | | | | Moderate increasing-decreasing | Moderate increasing | High decreasing | χ^2 | df | p | Class comparison | |
| Literacy | -0.03 | -0.66 | -0.91 | -0.21 | 60.10 | 3 | <0.001 | 1>3; 1>2; 4>3; 4>2 | 0.12 | -0.34 | -0.22 | -0.02 | 24.01 | 3 | <0.001 | 4>2; 1>2; 1>3 |
| Engagement & adjustment | 0.12 | -0.96 | -0.97 | -0.47 | 119.33 | 3 | <0.001 | 1>4>3; 1>4>2; | 0.14 | -0.76 | -0.69 | -0.20 | 94.34 | 3 | <0.001 | 1>4>2; 1>4>3 |
| Peer problems | 0.00 | 0.90 | 1.10 | 0.67 | 84.78 | 3 | <0.001 | 3>4>1; 2>1; | -0.15 | 0.60 | 0.47 | 0.09 | 68.90 | 3 | <0.001 | 2>4>1; 3>4>1; |
| Teacher liking | 0.06 | -0.36 | -0.43 | -0.25 | 26.15 | 3 | <0.001 | 1>3; 1>2; 1>4 | 0.05 | -0.24 | -0.37 | -0.02 | 16.74 | 3 | 0.001 | 1>2; 1>3; 4>3; |
| School belonging | 0.00 | -0.51 | -0.68 | -0.44 | 40.00 | 3 | <0.001 | 1>3; 1>2; 1>4 | 0.12 | -0.26 | -0.35 | -0.12 | 29.18 | 3 | <0.001 | 1>2; 1>4; 1>3; |

All values reported are standardised residuals. The effect of trajectories on adjustment outcomes was obtained after controlling for sex, language background other than English, Indigenous status, family socio-economic position, child age, and age 4-5 school readiness and receptive vocabulary.

사회적 취약성 보완

권위, 규율, 권력 등의 요소에 노출 + 특수한 신분

학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에 있게 됨

괴롭힘, 차별, 폭력, 소외 등의 문제 경험

- 기존의 포괄적 법제에서 내용적, 절차적으로 더욱 구체화·강화된 장치 → 권리침해 구제 서비스의 접근 수준 제고

3 학생인권의 접근

자유

- 아동·청소년도 헌법상 규정된 기본권을 보유한 주체라는 당연한 원칙에 기반하지 않을 수 없다. 아동·청소년은 헌법상 규정된 기본권의 주체로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고 인격권,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표현의 자유, 종교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을 누릴 권리가 있다.
- (중략) 아동·청소년이 헌법상 기본권을 보유한 주체라는 점은 당연한 헌법 및 법률해석의 대 원칙이 아닐 수 없다. 그리고 헌법상 기본권주체성에 의할 때, 아동·청소년은 물론 '보호'의 대상인 측면도 있지만 그보다 '인격적 욕구의 충족' 내지는 '참여'의 주체라는 측면이 오히려 더 헌법해석상으로는 먼저 고려되어야 할 성격이라고 평가할 수 있겠다.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이론과 실무」 (2018-A-4)

학생인권: 그 이유와 의미, 효능에 관한 개괄적 고찰 (김경훈)

11

보호

- 기본권을 인정하되 그 구체적 행사를 위한 조건으로 '자기결정'이라는 측면에서 자기결정의 능력이 어느 시점에 갖추어지는 것으로 보고 그 시점에 기본권의 구체적 행사를 인정한다는 논리는 가능할 수 있으나, '보호'라는 측면에서 아동·청소년의 기본권, 특히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보호'라는 개념의 본질상 부합하지 않는다고 할 수 있다.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이론과 실무」 (2018-A-4)

- 일반인이 보편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도덕 수준은 인습수준이라고 볼 수 있다. 실증연구를 통해 살펴봤을 때 이는 10대 중반 청소년기에 대부분 도달하므로 청소년이 성인에 비하여 도덕적 판단능력이 부족하다고 볼 수는 없다.

- Kohlberg, L. (1963).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orientations toward a moral order: I. Sequence in the development of moral thought. *Vita Humana*, 6(1-2), 11-33.

학생인권: 그 이유와 의미, 효능에 관한 개괄적 고찰 (김경훈)

12

인격주체성

- 헌법에 규정된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란 인간의 본질로 간주되는 존귀한 인격주체성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인간의 존엄이란 ‘인간은 자기책임능력이 있는 인격체’라는 의미이고, 인격의 주체성이란 ‘인간을 비인격적 자연과 구별하여 자기자신을 의식하고 자기 자신의 결단에 의하여 스스로를 규율하며, 자신과 주변세계를 형성할 능력의 소유자임’을 말하는 것이다.
- 이러한 인격주체성은 양도하거나 포기할 수 없는 것이며 때와 장소를 초월하여 인간에게 고유한 것이다. 그러나 인격의 주체성은 언제나 현실적이어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추상적 내지 잠재적인 것이면 족하다.

- 권영성. (2010). *헌법학원론*. 법문사.

- 학생은 인격의 발전을 위하여 어느 정도는 부모와 학교의 교사 등 타인에 의한 결정을 필요로 하는 아직 성숙하지 못한 인격체이지만, 부모와 국가에 의한 교육의 단순한 대상이 아닌 독자적인 인격체이며, 그의 인격은 성인과 마찬가지로 보호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 헌법재판소 [2011헌마827] 전원재판부 초·중등교육법 제47조제2항 등 위헌확인.



학생인권 보장 장치의 필요성 분석

1. 시대적 인식과 인권의 제도적 보장
2. 학생인권 보장 장치의 효능

1 시대적 인식과 인권의 제도적 보장

“청소년은 새 시대의 주역이다.”

<청소년헌장> (1990)

“청소년은 삶의 주인공이다. 청소년은 인격체로서 존중받을 권리와 시민으로서 미래를 열어 갈 권리를 가진다. 청소년은 스스로 생각하고 선택하며 활동하는 삶의 주체로서 자율과 참여의 기회를 누린다.”

<개정 청소년헌장> (1998)

“우리는 존재 자체만으로 존중받아야 한다.”

<어린이·청소년 교육문화권리선언> (2019)

학생인권: 그 이유와 의미, 효능에 관한 개괄적 고찰 (김경훈)

15

KidsRights Index의 지수 산정 기준 중 - 4. Environment

| | |
|--------------------------------------------------------|--------------------------|
| Non-discrimination | 비(非)차별 |
| Best interests of the child | 아동의 관심사 최우선 고려 |
| Respect for the views of the child/child participation | 아동/아동참여에 관한 관점의 존중 |
| Enabling legislation | (아동친화적 제도의) 법제화 허용 |
| Best available budget | 최선의 예산 수준 |
| Collection and analysis of disaggregate data | 세부 정보의 수집과 분석 |
| State-civil society cooperation for child rights | 아동권리를 지키기 위한 국가-시민사회의 협력 |

학생인권: 그 이유와 의미, 효능에 관한 개괄적 고찰 (김경훈)

16

| Countries | Rank KRI 2022 | Score KRI 2022 | Rank Environment | Score Environment |
|---------------------|---------------|----------------|------------------|-------------------|
| Thailand | 13 | 0.871 | 1 | 0.833 |
| Iceland | 1 | 0.945 | 2-3 | 0.800 |
| Qatar | 33 | 0.821 | 2-3 | 0.800 |
| Luxembourg | 6 | 0.905 | 4-5 | 0.786 |
| Mauritania | 141 | 0.556 | 4-5 | 0.786 |
| Cuba | 19 | 0.849 | 6-18 | 0.750 |
| Barbados | 30 | 0.829 | 6-18 | 0.750 |
| Malaysia | 42 | 0.810 | 6-18 | 0.750 |
| Antigua and Barbuda | 50 | 0.792 | 6-18 | 0.750 |
| Republic of Korea | 16 | 0.861 | 35-48 | 0.667 |

* 상대적이고 가시적인 변화에 대한 UNCRC의 의견을 바탕으로 산정. 표본 수=184.

학생인권: 그 이유와 의미, 효능에 관한 개괄적 고찰 (김경훈)

17

2 학생인권 보장 장치의 효능

① 자치법규의 바람직한 역할 수행

- 아동을 비롯한 주민의 인권 보호와 증진은 지방자치단체의 당연한 책무로 여겨지므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인권보호와 증진에 부합하도록 해야 하는 ‘권리에 기반한 접근(Rights-based Approach)’을 자치법제에 도입해야 한다.

- 국가인권위원회 광주인권사무소, 인권조례 제정운동의 전망과 모색 : 희망의 페러다임 자료집, 2010 광주아시아포럼.

② 법규범상의 권리 보장

- 특히 국가와의 관계에서 유효성이 주장되는 권리행사의 경우에는 되도록 아동·청소년에게 유리하게 해석하여 그 주체성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 김선택, (1997). 아동·청소년보호의 헌법적 기초, 「헌법논총」 8집, 헌법재판소.

학생인권: 그 이유와 의미, 효능에 관한 개괄적 고찰 (김경훈)

18

③ 학생 행동 면에서의 기본권이 구체적으로 보장

| (학생인권조례 시행 여부) | 미시행 | 기시행 | 차이 |
|----------------|-------|-------|--------|
| 두발 길이나 모양 제한 | 66.1% | 39.6% | 26.5%p |
| 면티/양말 색깔 제한 | 32.2% | 17.5% | 14.7%p |
| 치마/바지 길이, 폭 제한 | 68.7% | 55.4% | 13.3%p |
| 화장/미용제품 제한 | 71.8% | 62.1% | 9.7%p |
| 수업 외 시간 핸드폰 제한 | 84.0% | 74.4% | 9.6%p |
|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 23.2% | 11.5% | 11.7%p |
| 직접 체벌 | 32.4% | 23.5% | 8.9%p |
| 간접 체벌 | 40.6% | 30.5% | 10.1%p |
| 강제성 서약서, 동의서 | 24.4% | 14.7% | 9.7%p |

- 국가인권위원회 (2016)

| |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에 대한 교사의 신체적 폭력 • 교육비 미납·성적 등 학생 개인 정보 보호 침해 • 용의·복장 등 각종 검사 횡수 등 | 유의미하게 감소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학생의 자아존중감 • 행복감 • 인권의식 등 | 유의미하게 증가 |

- 박환보 (2021)

학생인권: 그 이유와 의미, 효능에 관한 개괄적 고찰 (김경훈)

19

④ 더 나은 학습환경 구축

(불필요한 규제에서 기인한)
 불안한 감시자-피감시자 관계에서 탈피

‘진정한 배움을 주는 이’ + ‘진정한 가르침을 받는 이’

비판적 사고, 창의력, 협동력을 기를 수 있는 더욱 매력적인 학습환경

- 인권적 가치의 학습은 학생들의 교육 참여도, 학업성취도, 사회·정서적 복지 수준 향상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며, 공감·관용·존중의식 함양에 직접적 영향을 줌
- 인권 수준 향상을 통해 징계에 해당하는 행위의 감소, 학교 출석률의 증가, 가정·교실·여가 장소에서의 관계의 긍정적인 변화가 보고됨 (ESA, 2010)

학생인권: 그 이유와 의미, 효능에 관한 개괄적 고찰 (김경훈)

20

⑤ 학생 이외의 교육주체들도 행복한 학교

학생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과 행복감

학생 자신의 인권이 보장된다고 인식



학교 전체의 배려문화 수준 제고

- 박환보 (2021)

- 수직적 학교문화와 강압적 분위기로 고통을 느끼던 교원
- 아이의 눈물과 심리적·신체적 상처로 고통받던 학부모
- 압박감에 시달리다 결국 학교를 떠난 많은 학교박청소년 등등...

학생인권: 그 이유와 의미, 효능에 관한 개괄적 고찰 (김경훈)

21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관한 공청회 (2010. 1.)

“인권은 인간이라면 요람에서 무덤까지 추구해야 하는 가치이므로 찬반의 이슈가 될 수 없고, 학생들이 존엄성을 어떻게 인정받느냐에 관한 토의라고 생각한다.”

(당시 경기도교원단체총연합회 정책위원장)

“학생인권조례 제정 자체는 반대하지 않으나, 경기도교육청이 우리 단체 의견은 묻지 않고 조례 제정을 추진해 비판 성명을 냈던 것이다.”

(당시 대한민국교원조합 위원장)

학생인권: 그 이유와 의미, 효능에 관한 개괄적 고찰 (김경훈)

22



학생인권에 관한 오해와 진실

1. 교권과의 충돌: 학생인권이 증진되면 교권이 '추락'하는가?
2. 성적 저하: 학생인권은 학생에게서 배움을 뺏어가는가?
3. 소년범죄율 상승 및 학교폭력 증가: '무법천지'의 도래?
4. 법원칙과의 충돌: 학생인권은 조례를 통해 보장할 수 없는가?

학생인권: 그 이유와 의미, 효능에 관한 개괄적 고찰 (김경훈)

23

1 교권과의 충돌: 학생인권이 증진되면 교권이 '추락'하는가?

인천광역시 교권확립헌장 운영 조례 (인천광역시조례 제4965호)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3. “교권”이란 학생에 대한 교원의 우월적 지위가 아니라 국민의 자녀교육권을 위임받아 교원 자신이 가지는 전문교과에 대한 지적능력, 높은 수준의 덕성과 인격을 바탕으로 진리와 양심에 따라 외부의 부당한 지배나 간섭이 없이 자유롭게 교육을 행할 수 있는 권리로 교육법규에 근거하여 수업권, 교육과정 결정권, 교재 선택 활용권, 강의내용 편성권, 교육방법 결정권, 성적 평가권, 학생생활지도권, 학생 징계요구권 등을 가지는 것을 말한다.

학생인권: 그 이유와 의미, 효능에 관한 개괄적 고찰 (김경훈)

24

| 2018 학년도 | 상해 폭행 | 모욕 명예 훼손 | 성적 굴욕감 혐오감 일으 키는 행위 | 공무 및 업무방해 | 협박 | 손괴 | 성폭력 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 불법정 보 유통 | 정당한 교 육활동을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 | 기타 | 합계 |
|-------------|---------------|------------------|------------------------------------|--------------|--------------|--------------|--------------|----------------------------|--------------------------------------|---------------|-----------------|
| 학생 | 165 (7.4%) | 1,309 (58.3%) | 164 (7.3%) | 69 (3.1%) | 65 (2.9%) | 15 (0.7%) | 16 (0.7%) | 13 (0.6%) | 263 (11.7%) | 165 (7.4%) | 2,244 (100%) |

합당한 이유 없는 수업 방해 행위

학생이 교사를 이유 없이 폭행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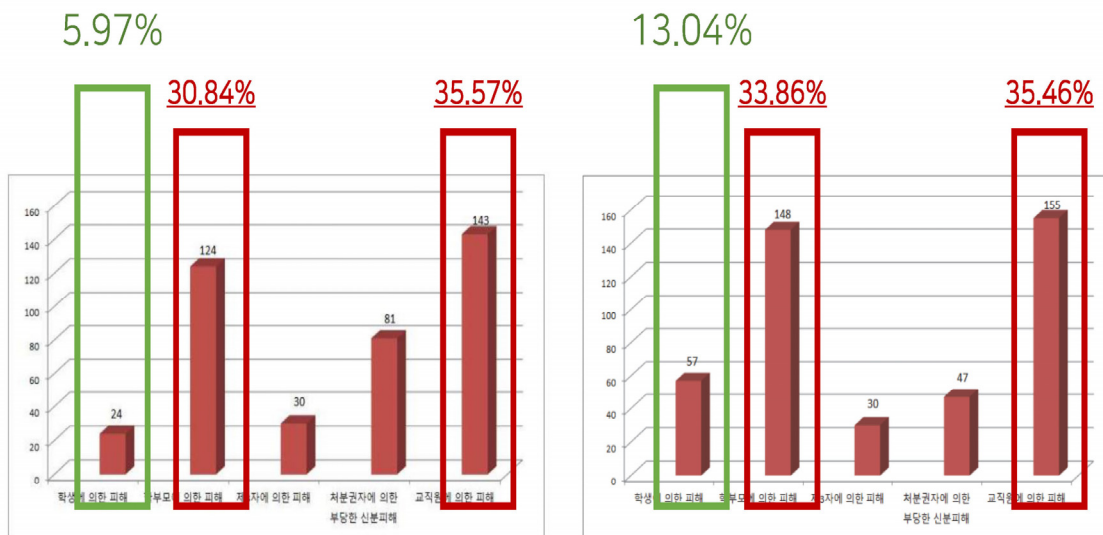
초상이나 음성의 무단 유포 등 개인정보권 침해 행위

etc...

'16, '19, '21 개정 <교원지위법>에 따라 적절한 처리 가능

학생인권: 그 이유와 의미, 효능에 관한 개괄적 고찰 (김경훈)

25



[그림 2] 유형별 교권침해 상담사례 접수 현황(건수)

[그림 2] 유형별 교권침해 상담사례 접수 현황(건수)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좌: 2020, 우: 2021)

학생인권: 그 이유와 의미, 효능에 관한 개괄적 고찰 (김경훈)

26

2 성적 저하: 학생인권은 학생에게서 배움을 뺏어가는가?

|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2022 | 평균 |
|----|------|------|------|------|------|------|------|------|------|------|------|------|------|------|
| 서울 | 7 | 6 | 5 | 5 | 7 | 4 | 4 | 4 | 3 | 2 | 1 | 1 | 1 | 3.8 |
| 부산 | 3 | 3 | 3 | 4 | 5 | 6 | 5 | 6 | 5 | 5 | 4 | 4 | 4 | 4.4 |
| 대구 | 4 | 4 | 3 | 3 | 4 | 3 | 3 | 2 | 2 | 3 | 3 | 3 | 2 | 3 |
| 인천 | 14 | 16 | 15 | 16 | 14 | 13 | 10 | 12 | 12 | 11 | 9 | 8 | 11 | 12.4 |
| 광주 | 2 | 2 | 2 | 2 | 1 | 2 | 2 | 3 | 4 | 4 | 5 | 7 | 5 | 3.2 |
| 대전 | 5 | 9 | 8 | 9 | 3 | 4 | 6 | 5 | 7 | 7 | 8 | 9 | 7 | 6.7 |
| 울산 | 6 | 11 | 9 | 7 | 10 | 9 | 7 | 6 | 6 | 6 | 7 | 6 | 10 | 7.7 |
| 경기 | 8 | 10 | 11 | 12 | 8 | 11 | 9 | 9 | 8 | 8 | 6 | 4 | 6 | 8.5 |
| 강원 | 10 | 5 | 10 | 10 | 11 | 14 | 17 | 16 | 16 | 17 | 17 | 16 | 17 | 13.5 |
| 충북 | 8 | 8 | 7 | 8 | 6 | 7 | 8 | 8 | 9 | 9 | 11 | 12 | 12 | 8.7 |
| 충남 | 16 | 15 | 13 | 12 | 12 | 12 | 13 | 13 | 14 | 15 | 15 | 15 | 14 | 13.8 |
| 전북 | 11 | 6 | 6 | 6 | 9 | 8 | 12 | 10 | 10 | 10 | 10 | 13 | 9 | 9.2 |
| 전남 | 13 | 13 | 16 | 15 | 16 | 15 | 16 | 15 | 17 | 16 | 16 | 17 | 15 | 15.4 |
| 경북 | 12 | 12 | 12 | 11 | 13 | 10 | 11 | 11 | 11 | 12 | 14 | 13 | 12 | 11.8 |
| 경남 | 14 | 14 | 13 | 14 | 15 | 16 | 14 | 14 | 13 | 14 | 11 | 11 | 16 | 13.8 |
| 제주 | 1 | 1 | 1 | 1 | 2 | 1 | 1 | 1 | 1 | 1 | 2 | 2 | 3 | 1.4 |
| 세종 | | | | | 17 | 17 | 15 | 17 | 14 | 12 | 11 | 10 | 7 | 13.3 |

2023. 04. 06. Ted-Edu (<https://ted-edu.tistory.com>)

평균 8.9

학생인권: 그 이유와 의미, 효능에 관한 개괄적 고찰 (김경훈)

27

기초학력 미달률 1)

[단위: %]

| |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
| 중학교 2) | 국어 | 1.0 | 1.3 | 2.0 | 2.6 | 2.0 | 2.6 | 4.4 | 4.1 | 6.4 | 6.0 |
| | 수학 | 3.5 | 5.2 | 5.7 | 4.6 | 4.9 | 7.1 | 11.1 | 11.8 | 13.4 | 11.6 |
| | 영어 | 2.1 | 3.4 | 3.3 | 3.4 | 4.0 | 3.2 | 5.3 | 3.3 | 7.1 | 5.9 |
| 고등학교 3) | 국어 | 2.1 | 2.9 | 1.3 | 2.6 | 3.2 | 5.0 | 3.4 | 4.0 | 6.8 | 7.1 |
| | 수학 | 4.3 | 4.5 | 5.4 | 5.5 | 5.3 | 9.9 | 10.4 | 9.0 | 13.5 | 14.2 |
| | 영어 | 2.6 | 2.8 | 5.9 | 4.4 | 5.1 | 4.1 | 6.2 | 3.6 | 8.6 | 9.8 |

출처: 교육부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 (상위 점수) | | | | | | | | | | | | | |
|---------|-------|-------|-------|-------|-------|-------|-------|-------|-------|-------|-------|-------|-------|
| 제정 | 0.997 | 1.025 | 1.015 | 1.016 | 1.02 | 1.015 | 1.013 | 1.014 | 1.013 | 1.013 | 1.001 | 1.008 | 1.003 |
| 미제정 | 1.003 | 1.002 | 1.002 | 1.001 | 0.994 | 0.996 | 0.993 | 0.991 | 0.992 | 0.989 | 0.991 | 0.985 | 0.99 |

기초학력 미달률은 전국적으로 증가 추세.
학생인권조례 제정 여부와의 상관관계 찾기 어려움

학생인권조례 제정 전후 대수능 성적에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음

학생인권: 그 이유와 의미, 효능에 관한 개괄적 고찰 (김경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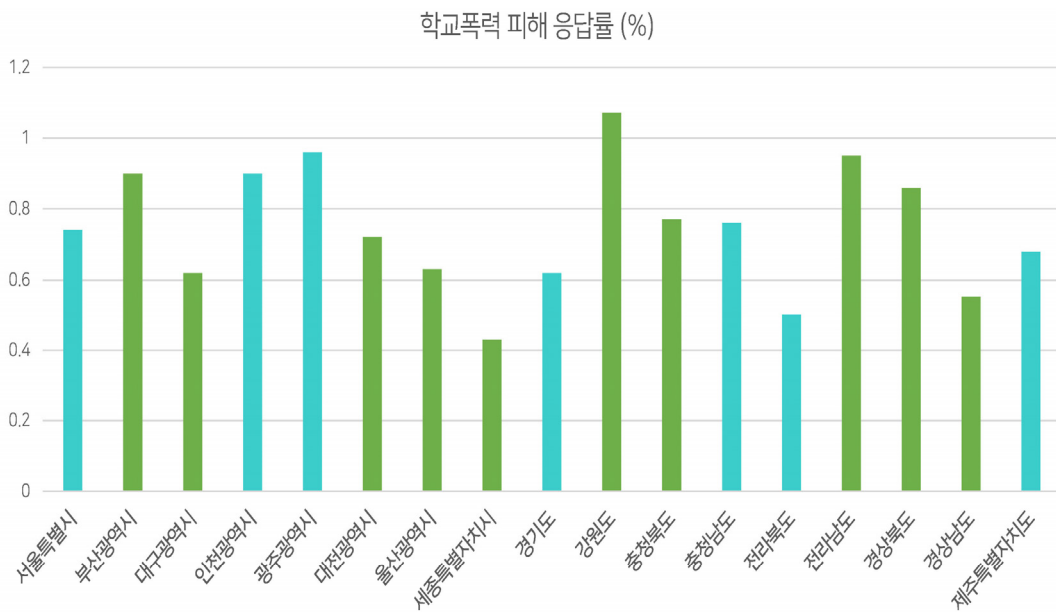
28

3 소년범죄율 상승 및 학교폭력 증가: '무법천지'의 도래?

| | | | | | | | | | | | | | | | |
|-----------|------|------|------|------|------|------|------|------|------|------|------|------|------|------|------|
| 경기도 | - | - | 12.8 | 11.6 | 15.3 | 13.3 | 12.5 | 13.7 | 13.4 | 13.3 | 12.4 | 12.9 | 13.0 | 10.6 | 2010 |
| 서울특별시 | - | - | - | - | 18.1 | 15.7 | 13.9 | 13.9 | 13.6 | 13.7 | 13.1 | 13.2 | 12.3 | 10.1 | 2012 |
| 광주광역시 | - | - | - | - | 21.6 | 16.7 | 14.1 | 14.7 | 14.5 | 15.4 | 14.2 | 15.4 | 16.8 | 12.5 | 2012 |
| 전라북도 | - | - | - | - | - | 12.2 | 12.3 | 12.4 | 11.8 | 12.0 | 12.6 | 11.4 | 13.4 | 12.4 | 2013 |
| 충청남도 | - | - | - | - | - | - | - | - | - | - | - | - | 13.0 | 12.1 | 2020 |
| 인천광역시 | - | - | - | - | - | - | - | - | - | - | - | - | - | 13.8 | 2021 |
| 제주특별자치도 | - | - | - | - | - | - | - | - | - | - | - | - | - | 11.4 | 2021 |
| 제정 지역 평균 | 16.9 | 15.7 | 13.2 | 11.9 | 15.4 | 13.4 | 12.4 | 13.1 | 12.8 | 12.8 | 12.1 | 12.5 | 13.5 | 11.8 | -5.1 |
| 서울특별시 | 20.2 | 19.1 | 15.1 | 13.8 | - | - | - | - | - | - | - | - | - | - | 2012 |
| 부산광역시 | 22.8 | 24.7 | 18.4 | 16.3 | 23.8 | 21.1 | 18.8 | 21.6 | 20.5 | 20.6 | 19.4 | 18.5 | 16.3 | 12.4 | |
| 대구광역시 | 18.3 | 16.0 | 13.4 | 14.9 | 19.4 | 17.1 | 13.8 | 14.0 | 15.2 | 13.9 | 13.1 | 14.7 | 13.6 | 13.0 | |
| 인천광역시 | 20.3 | 17.3 | 15.3 | 17.3 | 18.8 | 17.0 | 14.2 | 15.3 | 17.9 | 16.3 | 16.1 | 16.5 | 16.7 | - | 2021 |
| 광주광역시 | 20.1 | 19.6 | 17.4 | 15.9 | - | - | - | - | - | - | - | - | - | - | 2012 |
| 대전광역시 | 19.1 | 14.5 | 12.4 | 10.4 | 16.0 | 16.3 | 14.6 | 15.5 | 14.7 | 14.8 | 14.0 | 15.9 | 15.2 | 23.0 | |
| 울산광역시 | 18.4 | 15.4 | 14.7 | 13.8 | 14.9 | 13.7 | 13.6 | 16.0 | 14.1 | 14.1 | 12.4 | 12.0 | 12.7 | 16.1 | |
| 세종특별자치시 | - | - | - | - | - | - | - | - | - | - | - | 8.0 | 6.1 | 7.5 | |
| 경기도 | 16.1 | 17.5 | - | - | - | - | - | - | - | - | - | - | - | - | 2010 |
| 강원도 | 19.7 | 18.3 | 16.2 | 15.4 | 18.4 | 14.3 | 12.8 | 13.4 | 13.9 | 13.7 | 12.5 | 11.8 | 12.4 | 11.5 | |
| 충청북도 | 15.5 | 15.3 | 12.7 | 12.7 | 14.2 | 13.6 | 12.9 | 12.9 | 13.6 | 14.4 | 13.6 | 14.8 | 15.6 | 12.4 | |
| 충청남도 | 14.7 | 12.1 | 11.7 | 9.4 | 14.0 | 13.6 | 13.3 | 13.9 | 13.1 | 11.9 | 12.3 | 13.1 | 13.0 | 12.1 | 2020 |
| 전라북도 | 15.1 | 14.9 | 11.9 | 11.8 | 14.7 | - | - | - | - | - | - | - | - | - | 2013 |
| 전라남도 | 19.2 | 17.0 | 13.4 | 11.8 | 14.7 | 11.8 | 10.9 | 11.7 | 12.5 | 11.9 | 10.8 | 12.4 | 14.7 | 13.9 | |
| 경상북도 | 15.1 | 13.2 | 10.6 | 10.6 | 13.5 | 12.2 | 11.0 | 11.7 | 11.9 | 11.6 | 10.7 | 11.6 | 12.4 | 11.0 | |
| 경상남도 | 15.2 | 14.4 | 11.8 | 11.1 | 11.6 | 10.4 | 9.4 | 11.1 | 10.5 | 10.2 | 8.6 | 10.0 | 11.5 | 10.4 | |
| 제주특별자치도 | 21.6 | 18.3 | 17.8 | 13.4 | 13.3 | 14.3 | 12.8 | 14.4 | 11.8 | 13.5 | 11.2 | 11.4 | 15.1 | - | 2021 |
| 미제정 지역 평균 | 18.2 | 16.7 | 14.2 | 13.2 | 15.9 | 14.6 | 13.2 | 14.3 | 14.1 | 13.9 | 12.9 | 13.1 | 13.5 | 13.0 | -5.2 |

학생인권: 그 이유와 의미, 효능에 관한 개괄적 고찰 (김경훈)

29



- 교육부, 한국청소년상담복지개발원 (2019년 데이터)

학생인권: 그 이유와 의미, 효능에 관한 개괄적 고찰 (김경훈)

30

| 김경훈, 2023. 03. 22. | 2008 | 2009 | 2010 | 2011 | 2012 | 2013 | 2014 | 2015 | 2016 | 2017 | 2018 | 2019 | 2020 | 2021 | 제정연도 |
|--------------------|-------|-------|-------|-------|-------|-------|-------|-------|-------|-------|-------|-------|--------|-------|------|
| (제정 평균-미제정 평균) | -1.3 | -1.1 | -1.0 | -1.3 | -0.6 | -1.3 | -0.8 | -1.2 | -1.4 | -1.1 | -0.8 | -0.7 | 0.1 | -1.2 | -1.0 |
| (제정 평균/미제정 평균) % | 92.85 | 93.67 | 92.83 | 90.18 | 96.52 | 91.36 | 93.83 | 91.45 | 90.19 | 92.31 | 93.68 | 95.08 | 100.43 | 90.48 | 93.2 |

학생인권조례 시행과 소년범죄율 상승은 상관관계가 없다.

(or) 학생인권조례 시행 시 소년범죄율이 하락한다.

학생인권: 그 이유와 의미, 효능에 관한 개괄적 고찰 (김경훈)

4 법원칙과의 충돌: 학생인권은 조례를 통해 보장할 수 없는가?

92헌마264
“조례에 대한 법률의 위임, 포괄적인 것으로 족하다”

2013추97
“인권조례에서 규정하는 권리 및 규제는 상위법 취지에 부합하며 학교·교사 재량을 침해하지 않는다”

2017헌마1356
“인권조례 차별금지조항에 법률유보의 원칙 및 과잉금지의 원칙 위배 없다”

2020구합64446
2심 각하, 3심 각하
“인권조례에 따른 행정기구 (학생인권옹호관, 학생인권교육센터) 설치에는 법 위배 없다”

학생인권: 그 이유와 의미, 효능에 관한 개괄적 고찰 (김경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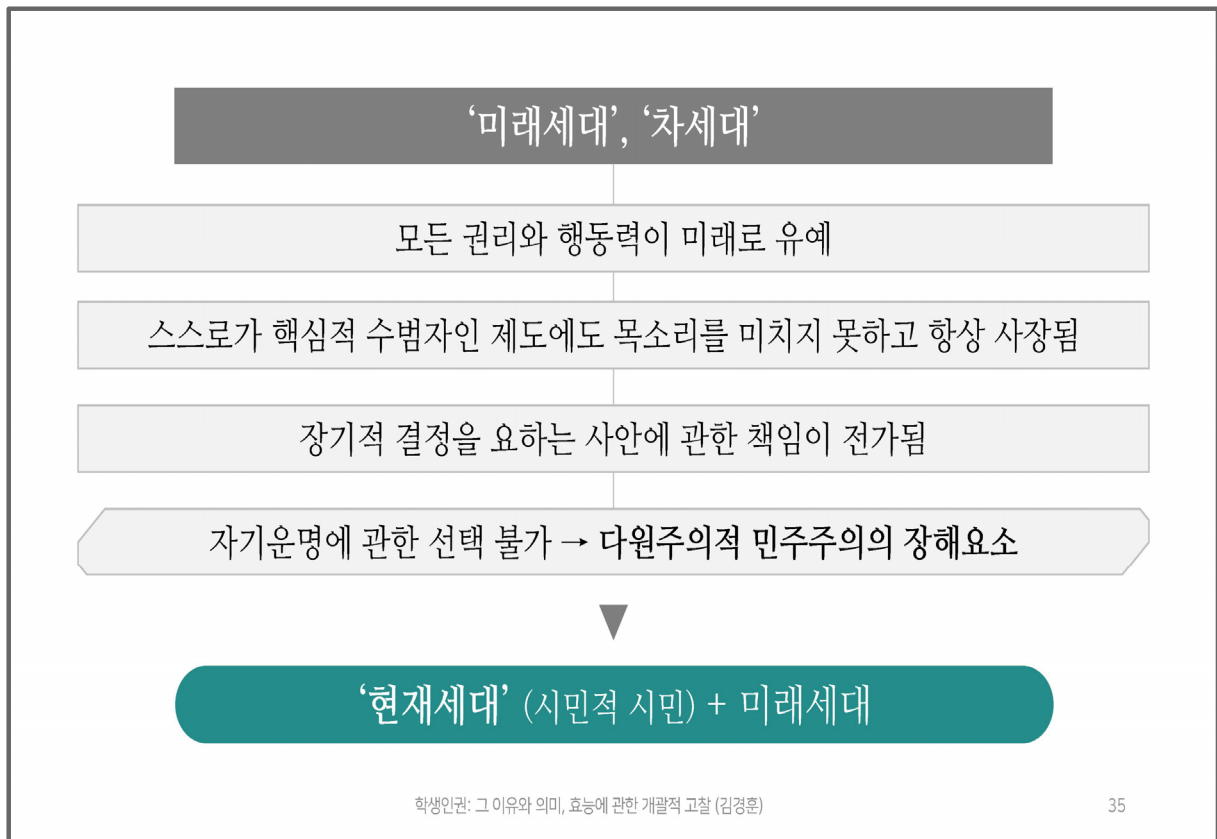
IV

결론 및 제언

1. 패러다임의 전환 - 미래세대에서 '현재세대'로
2.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강화
3. 학생인권 보장 장치의 구속력 강화
4. 학생인권 보장 및 사회적 지위 강화의 국가사무화

1 패러다임의 전환 - 미래세대에서 '현재세대'로

The image shows a collage of news snippets from various Korean news outlets, including cokkukon, uir9098, dnr, and dal1988. The snippets discuss the 2020 '2020 Year of the Student' and the 'Future Generation' (미래세대) and 'Current Generation' (차세대) paradigm shift. A central grey box contains the text '미래세대', '차세대'.



2 청소년의 임파워먼트 강화

프랑스 교육고등위원회 Conseil supérieur de l'éducation

국가교육위원회와 역할 유사
 위원 48명 중 4명(8.3%) 이상 고등학생 위원 의무 위촉

프랑스 고등학생평의회 Le Conseil national de la vie lycéenne

프랑스 국가교육부장관이 회의 주재
 지역/중앙 고등학생 평의회의 선출직 위원 33명으로 구성

핀란드 국가교육위원회 Conseil supérieur de l'éducation

2019~2023 위원 17명 중 3명(18%)이 중·고등학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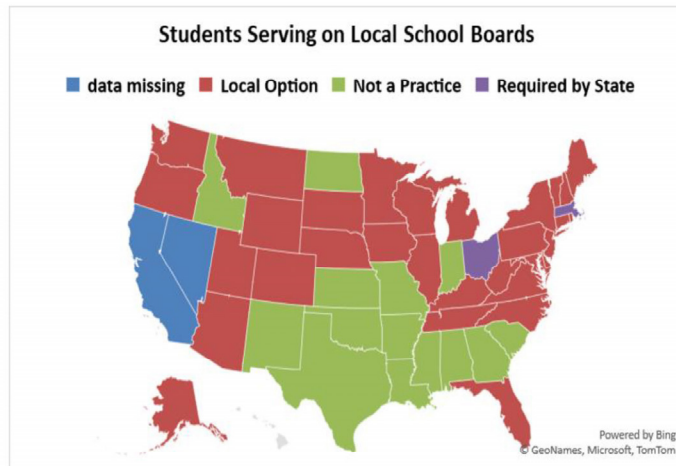
학생인권: 그 이유와 의미, 효능에 관한 개괄적 고찰 (김경훈)

36

미국 (지역별) 교육위원회 Local School Board(s)

14개 주를 제외하고 전원 학생위원 참여 가능. 지역 학생의회 선출직, 임명직 등 다양 (* 같은 주 내에서도 County, City 등마다 방식이나 인원이 다를 수 있음)

Figure 1. How States Practice Student Representation on Local School Boards



- 전미 교육위원회 연맹 (NSBA)
2020 교육 거버넌스 조사

주1: data missing으로 된 州인 CA, NV도 학생위원 참여 가능함. (CA는 고등학교 500인 이상 요청에 따라 학군에서 임명, NV는 지역 청소년의회에서 선거)

학생인권: 그 이유와 의미, 효능에 관한 개괄적 고찰 (김경훈)

37



Upper Secondary Education Act (No. 92-2008)

제39조. 고등학교 학생회

학생회는 모든 고등학교에서 운영되어야 한다. 학생회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의 사회 활동, 일반적인 이익 및 복지 관리에 전념해야 한다. 그것은 그것의 구성, 역할, 그리고 작업 방법에 관한 자체적인 규칙을 정할 것이다. 학생회는 해당 학교의 책임 하에 운영된다. 학교는 각 학생회의 운영을 위한 시설을 제공해야 한다. 고등학교는 학생회에 자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학생회의 회계는 학교의 다른 재정과 동일한 감사를 받아야 한다.

사회 전 영역에서 청소년의 정치적 임파워먼트 강화

권리 + 권리에 따르는 의무의 주체적 이해 및 능동적 실행

학생인권: 그 이유와 의미, 효능에 관한 개괄적 고찰 (김경훈)

38

3 학생인권 보장 장치의 구속력 강화

- 현행 학생인권조례에서 명시된 조치는 인권침해 사안에 대한 처리 방식이 권고에 그치는 등 그 구속력을 명확하게 갖추지 못함
- 조례가 실질적이고 명확한 변화를 이끌지 못하여 대다수의 교육주체들, 특히 학생에게서 낮은 수준의 인지도·신뢰도를 보임
 -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의 저조 및 옹호관 활동의 어려움
 - 폐지 주장을 공익적인 가치에 따른 것으로 교묘히 포장하려는 시도의 근거가 되고 있음

적극적이고 직접적인 조치가 가능하도록 보장 장치의 구속력 강화

학생인권: 그 이유와 의미, 효능에 관한 개괄적 고찰 (김경훈)

39

4 학생인권 보장 및 사회적 지위 강화의 국가사무화

- 교원의 지위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규율이 필요하고 또 국가가 이를 위하여 상당한 경비를 부담하고 있으므로, 이에 관한 사무는 국가사무로 보아야 한다. (후략)


- 대법원 [2013추142] 전북교원보호조례 조례안의결무효확인

학생인권 보장의 기초 및 사회적 지위 강화의 원칙 등은 국가사무로 이관
조례에는 구체적인 (행정)사무 등만을 명시하는 것이 적절

별도 법률 제정 시 「행정기본법」 상 충돌 없도록
신법으로의 통합을 목적으로 하는 기존 법률 정비 병행

학생인권: 그 이유와 의미, 효능에 관한 개괄적 고찰 (김경훈)

40

사회법 VII. 아동과 청소년 (Sozialgesetzbuch VII: Kinder- und Jugendhilfe) 


제8조. 아동·청소년의 참여

(1) 아동·청소년은 그들의 발전 수준에 따라 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청소년 지원 체계에 관한 공공의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 (후략, (2) 생략)

(3) 아동·청소년은 법정대리인에게의 통지로 말미암아 상담의 목적이 훼손되는 경우에 보호자의 동의 없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후략)

(4) 이 법... 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학생인권은 교육의 하위 범주로서 선택적인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 당연히 보장받아야 하는 것임.

아동의 종교교육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die religiöse Kindererziehung: 1921. 07. 15. 제정, )
102년 간 수정 없이 시행 중)

제4조. 자녀의 종교적 양육을 위한 계약은 민사상의 효력을 가질 수 없다.

제5조. 만 14세 (이상의) 아동은 어떤 종교적 신념을 지킬지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만 12세 (이상의) 아동은 자신의 의사와 반하여 이전과 다른 신념을 바탕으로 양육될 수 없다.

학생인권: 그 이유와 의미, 효능에 관한 개괄적 고찰 (김경훈) 41





학생인권. 그 이유와 의미, 효능에 관한 개괄적 고찰 (김경훈)



학생인권. 그 이유와 의미, 효능에 관한 개괄적 고찰 (김경훈)



학생인권: 그 이유와 의미, 효능에 관한 개괄적 고찰 (김경훈)

인용 및 참고 자료

- Bytheway, B. (1999). *Ageism*. Buckingham Open University Press.
- Campbell, D. (2006) What Is Education's Impact on Civic and Social Engagement? In: *Measuring the Effects of Education on Health and Civic Engagement: Proceedings of the Copenhagen Symposium*, OECD, Paris.
- Duckworth, A.L.; Peterson, C.; Matthews, M.D.; Kelly, D.R. (June 2007). "Grit: Perseverance and passion for long-term goal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92 (6)
- Education Services Australia, *Giving Voice to the Impacts of Values Education: The Final Report of the Values in Action Schools Project*, October 2010.
- Glink, Steven E. "Student Rights", "Student Freedom"
- Reiss, M. White, J. (2017). *청소년의 행복을 위한 교육. (원제: An Aims-based Curriculum: The significance of human flourishing for schools)*. 공감플러스.
- Mannion, G. (2003). Children's participation in school grounds developments: creating a place for education that promotes children's social inclusion, *International Journal of Inclusive Education* Vol. 7, No. 2.
- UN(L. Kuai 외). (2022). *Youth2030: Progress Report 2022*.
- UNCRC. (1996. 02. 13.). *《Concluding observations of the Committee on the Rights of the Child: Republic of Korea》*.
- UNCRC. (2003. 03. 13.). *《CONSIDERATION OF REPORTS SUBMITTED BY STATES PARTIES UNDER ARTICLE 44 OF THE CONVENTION: Concluding observations: Republic of Korea》*.
- UNCRC. (2019. 10. 24.). *《Concluding observations on the combined fifth and sixth periodic reports of the Republic of Korea》*.

학생인권: 그 이유와 의미, 효능에 관한 개괄적 고찰 (김경훈)

- UN Special Procedures. (2023. 01. 25.). 《Mandates of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to education; the Special Rapporteur on the right of everyone to the enjoyment of the highest attainable standard of physical and mental health; the Independent Expert on protection against violence and discrimination based on sexual orientation and gender identity and the Working Group on discrimination against women and girls》.
- Wang, C. et al. (2018). Can teacher-child relationships support human rights to freedom of opinion and expression, education and participation?. *International Journal of Speech-Language Pathology*. Vol. 20, No. 1.
- 교육부. (2012~2021)/ 국가수준학업성취도평가 결과.
- 구정화. (2014). 학생인권조례 시행 후 학교 인권 상황에 대한 학생의 인식-광주광역시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제46권 제1호.
- 김경훈. (2022). 학생자치조례의 당위성에 관한 법적 고찰. <청소년특별회의 위원연구회 학술교류회> 자료집.
- 김경훈. (2022). 우리에게 '정치'란 무엇이 되어야 하는가?: 임파워먼트 수준과 정치교육의 관계. 한국교육연구네트워크 「학교와 정치교육」 포럼.
- 김동석. (2023). 소중한 학생 인권 존중과 보호, 조례만이 답일까?-인권 친화적 학교 문화는 권리와 의무(책임)의 균형부터.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문제점에 대한 세미나> 자료집.
- 김영인, 구정화. (2020). *청소년 인권과 참여*.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출판문화원.
- 김선택. (1997). 아동-청소년보호의 헌법적 기초. 「헌법논총」 제8집. 헌법재판소.
- 김성수. (2019). 미래세대 보호를 위한 법리적, 헌법적 기초. 「법학연구」 제29권 제4호.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김주현. (2009). 연령주의(Ageism) 관점을 통한 노년의 이해. 「사회와역사」 vol., no.82.
- 박은희. (2019). 고등학생이 지각한 부모의 양육태도 및 교사의 자율성지지와 자기주도 학습능력과의 관계. 「한국교육논총」 제40권 제1호.
- 박환보. (2021). 학생인권조례 시행이 학교의 인권환경 조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제31권 제1호.

학생인권: 그 이유와 의미, 효능에 관한 개념적 고찰 (김경훈)

47

- 서울특별시교육청교육연구정보원 교육정책연구소. (2022). 미국의 기초학력 증진을 위한 법적 토대: 모든학생성공법(Every Student Student Succeeds Succeeds Act)을 중심으로.
- 양난주. (2007). 사회정치적 임파워먼트와 노인복지. 「사회복지연구」 vol. 35, 2007. 겨울.
- 염철현. (2016). 미국의 '모든 학생의 성공법(ESSA)' 제정 및 시사점. 「교육법학연구」 제28권 제1호.
- 신강숙. (2022). 학생인권 보장 현황과 입법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 학생인권조례를 통하여 본 학생인권의 나아갈 길. 「교육법학연구」 Vol. 33, No. 2. 한국교육법학회.
- 신강숙. (2020). 학생인권 보장 현황과 개선 방향에 대한 연구- 학생인권조례 10년을 통하여 본 학생인권의 나아갈 길. 강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안기성. (1988). 憲法과 教育. 「교육법학연구」 Vol. 1, No. 0. 한국교육법학회.
- 유성상. (2014).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추진과정과 주요쟁점. 제8대 서울시의회 주요 정책논단.
- 유성상. (2020). *인권과 학교교육*. 박영스토리.
- 유혜영. (2014). 청소년의 사회참여 활동이 정치참여 의사에 미치는 경로 - 사회적 신뢰, 공동체 의식, 자아 효능감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시민교육연구」 제 46권 3호. Pp. 141~166.
- 윤성이. (2009). 민주주의 패러다임의 재성찰. 「현대정치연구」 vol. 2, no. 2.
- 윤정일 외. (2021). *교육행정학 원론 제7판*. 학지사.
- 이은경, 이천이. (2021). 부모의 구조제공과 아동의 학업성취도의 관계: 그것에 의해 조절된 학업열의의 매개효과. 「아동학회지」 vol.42, no.1.
- 이창식 외. (2017). Mediating effect of growth mindset and grit between human rights victimization and self-esteem. 「디지털융복합연구」 Vol. 15, No. 9.
- 임효진. (2017). 그릿(Grit)의 요인구조와 타당도에 관한 탐색적 연구. 「아시아교육연구」, Vol. 18, No. 2.
- 정순원. (2011). 학생인권조례의 현황과 공법적 쟁점. 「교육법학연구」 Vol. 23, No. 2. 한국교육법학회.

학생인권: 그 이유와 의미, 효능에 관한 개념적 고찰 (김경훈)

48

- 정순현. (2016). 학생인권 조례제정의 판단과 방향. 「인권이론과 실천」 제8호.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인권교육연구센터. 권 :정당가입 연령제한을 중심으로. <헌법이론과 실무> 2018-A-4.
- 정연부. (2011). 학생인권 조례에 대한 공법적 검토. 「토지공법연구」 제52집. 한국토지공법학회. 현재 [89헌가95] 국세기본법 제35조제1항제3호의 위헌심판.
- 조금주. (2016). 학생인권조례 분석 및 학생인권 조사 개발 방향. 「청소년학연구」 Vol. 23, No. 2. 한국청소년학회. • 현재 [89헌마32] 國家保衛立法會議法 등의 違憲與否에 관한 憲法訴願.
- 조기성, 정상우. (2016). 교권의 개념과 침해 구제방안. 교육문화연구 제22-6호(2016년), pp. 33~57. • 현재 [89헌마88] 교육법 제157조에 관한 헌법소원.
- 조성규. (2013). 조례제정권의 관점에서 본 학생인권조례의 법적 쟁점. 「행정법연구」 Vol. 35. 행정법이론실무학회. • 현재 [91헌마31]不起訴處分에 대한 憲法訴願.
- 지영준. (2023). 학생인권조례와 인권 행사 능력의 문제점 - 미성년자의 보호와 자기결정능력을 중심으로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문제점에 대한 세미나> 자료집. • 현재 [92헌마264] 부천시담배자동판매기설치금지조례 제4조 등 위헌확인.
- 최승원, 최윤영. (2014). 자치입법을 통한 아동의 인권 보장: 서울 특별시 어린이 청소년인권조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법연구」 Vol. 42, No. 14-2. • 현재 [98헌가16, 98헌마429(병합)]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22조 제1항 제1호 등 위헌제청, 학원의설립·운영에관한법률 제3조 등 위헌 확인.
- 한상범. (1988). 현대인권론. 동국대학교 출판부. • 현재 [2011헌마827] 초·중등교육법제47조제2항등위헌확인.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원. (2018). 아동·청소년의 정치적 기본권 :정당가입 연령제한을 중심으로. <헌법이론과 실무> 2018-A-4. • 현재 [2017헌마250]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 현재 [2017헌마1356] 서울시학생인권조례 제3조제1항 등 위헌확인.

- 현재 [2017헌마127] 형법 제26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vom 4. Mai 2021.
- 대법원 [2013추98] 전북학생인권조례(안) 의결 무효 확인. • Sozialgesetzbuch: Kinder- und Jugendhilfe (Zuletzt geändert durch Art. 1 G v. 21.12.2022 I 2824)
- 청주지방법원 [2013구합678] 각하처분취소. • Iceland National Youth Act (No. 70-2007)
- 울산지방법원 [2013가합61] 징계처분무효. • Iceland Upper Secondary Education Act (No. 92-2008)
- 서울행정법원 [2020구합64446] 학생인권센터예산지원중지등주민소송. • K-12 Student Bill of Rights and Responsibilities (NYC)
- 어린이·청소년 100인회의. “어린이·청소년 교육문화권리선언”. 2019. 10. 23. • NYC Regulation of the Chancellor A-831. Student-to-student Sexual Harassment.
- State of Hawaii BOE Policy 101-1. Student Bill of Rights and Responsibilities. (March 1974) • NYC Regulation of the Chancellor A-832. Student-to-student Discrimination, Harassment, Intimidation and/or Bullying.
- State of Hawaii BOE Policy 101-1. STUDENT CODE OF CONDUCT. The Board of Education acknowledges the Student Bill of Rights and Responsibilities. • etc...
- Every Student Success Law. Public Law: 114-95-DEC. 10, 2015.
- Gesetz über die religiöse Kindererziehung. 404-9) Art. 15 G



발 제
05

학생인권을 위한 '근로기준법',
학생인권법이 필요한 이유

▶ 공현(청소년인권 활동가)



학생인권을 위한 '근로기준법', 학생인권법이 필요한 이유

공현

(청소년인권 활동가)

1 기업/학교의 자율성보다 앞서는 인간의 존엄성

「근로기준법」은 임노동 계약을 맺은 모든 사업장에 적용된다. 법에 따라 노동시간 상한 기준, 일정한 휴일 및 유급휴가, 차별 없는 균등한 처우 등을 노동자에게 보장하도록 하고 있다. 「최저임금법」도 모든 노동자가 시급이든 월급이든 임금의 최저선을 보장한다. 「근로기준법」이 정한 기준을 벗어나는 노동조건은 불법이며 그런 계약을 맺어도 무효가 된다.¹⁾

이런 법이 있는 이유는 노동자의 인권을 지키기 위해서다. 산업마다, 기업마다 일하는 방식도, 노동의 내용도, 문화도 모두 다름에도, 「근로기준법」이나 최저임금 제도는 노동자의 인간다운 삶을 위해서 최소한 이 정도의 선은 모두에게 지켜져야 한다고 정한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기업의 자유로운 활동을 장려함에도, 노동자의 인권에 관해서는 이와 같은 명확한 기준을 지키라고 하고 있다. 인간의 존엄성이 기업의 자율성보다 더 우선하는 가치이기 때문이다.

또한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사장, 기업)의 권리를 다룬 내용을 매우 찾아보기 어렵다. 왜냐하면 사용자는 노동자와의 계약에서 보통 유리한 입장에 있고, 또 사용자가 피해를 입더라도 이는 일반적인 「형법」이나 민사적 손해배상 등의 방법으로 충분히 다룰 수 있다. 「근로기준법」의 취지에도 맞지 않기에, 만약 사용자의 권익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가 필요하다면 별도의 법이 만들어지는 것이 적절하다.

노동자의 의무를 거론한 내용도 거의 없다. 노동자에게는 근로계약, 취업규칙, 업무 지시 등으로 노동의 과정에서 이미 많은 의무와 책임이 부과된다.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일을 하고 어떤 의무를 지게 할지야말로 산업마다, 기업마다 다른 문제이다. 그렇기에

1) 「근로기준법」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①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

“근로자와 사용자는 각자가 단체협약,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을 지키고 성실하게 이행할 의무가 있다.”(제5조)라는 원칙이 있으면 될 뿐, 구체적 사항은 각 일터에서 정하는 게 적절하다.

2 학생인권을 경시해온 한국 교육의 역사

서두에 「근로기준법」 이야기를 한 이유는, 학생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도가 필요한 이유가 「근로기준법」이 필요한 이유와 흡사하기 때문이다. 지난 수십 년 간 학생은 학교 안에서 지시받고 통제받는 대상으로 자리해 왔다. 학교규칙에 의해서든, 문화와 관행에 의해서든, 교사의 자의적 권력 행사에 의해서든 학생들의 인권은 매우 쉽게 침해당해 왔다. 하지만 학생들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기 어려운 지위에 놓여 있고, 또한 학생의 인권이 무엇인지 자체에 대해서도 사회적 합의가 만들어지지 않은 채 방치되어 왔다.

1990년대 이후 대두한 청소년인권운동은 두발·복장의 자유(개성 실현의 권리), 체벌 및 언어폭력·모욕적 대우의 금지, 정규 수업 시간 외 보충·자율학습에 대한 강요 중단, 소지품 검사·압수의 폐지를 비롯한 사생활의 자유 보장, 학교 내 언론·표현·집회·결사의 자유 보장, 학교·교사에 의한 종교 강요 중단, 학생 자치 활동의 자율성, 학교 운영 참여권 등을 주요 학생인권 문제로 제기했다. 이 운동은 10여 년에 걸쳐 학생인권 문제를 정부가 해결해야 할 사회 문제로 부상시켰고, 그 방법 중 하나로 학생인권을 위한 입법을 추진했다.

처음부터 학생인권 문제 해결의 방법으로 법을 만드는 것이 거론된 것은 아니었다. 예컨대 두발자유 운동에서는 원래 교육부에 학교들에 두발자유화 지침을 내릴 것을 요구했다. 인권 보장의 책무가 있는 중앙정부의 행정적 조치만으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봤던 것이다. 더군다나 사적 영역도 아니고 국가가 책임지고 운영하는 공교육기관에서 벌어지는 인권 문제이니만큼 주무 부처가 의지를 갖고 감독한다면 그리 어렵지 않을 듯했다. 그러나 2000년, 2005년 두 번에 걸쳐 교육부는 ‘두발규정은 각 학교가 알아서 결정할 문제이고, 학생들의 의견을 민주적 절차로 수렴하여 자율적으로 정하라’라는 방침을 발표했다. 정부가 학생인권 보장 요구에 학교의 자율이라고 대꾸한 역사가 20년이 넘는 셈이다.

교육부는 시종일관 학생인권의 문제들에 ‘학교 자율’ 또는 ‘각 지역 교육청이 알아서 할 일’이라고 답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입장은 ‘인권’이라는 말이 내포한 의미와 모순된다. 인권은 인간의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권리이자 존엄의 문제이고, 인권 보장은 정부와 법의 목적이자 출발선이다. 정부가 최저임금보다 돈을 더 적게 주든 말든, 하루에 노동을

12시간을 시키든 말든 기업의 자율이라고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한민국 정부가 학교의 자율 사항이라는 입장에서 한 발짝도 더 나아가지 않고 있는 것은, 결국 학생의 인권 문제를 진지하게 '인권'의 문제로 받아들이지 않고 있으며, 학생인권을 좀 침해하거나 제한해도 되는 것으로 경시하고 있다는 의미이다. 한국의 학교가, 교육 제도가, 교육 당국이 학생인권 문제에 관해 1980년대이든 2000년대이든 2020년대이든 근본적으로 바뀌지 않고 있다는 말이기도 하다.

3 학생인권 제도화의 의의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자 2005년 이후, 법을 만들려는 노력이 이어졌다. 법을 만들고 바꾸는 것은 민주주의에서 사람들의 주요한 의사 반영 통로이다. 정부는 법이 정한 것에 기반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따라서 법에 학생의 인권이 무엇인지 그 내용을 명시하고, 정부와 학교가 학생인권 보장을 위해 구체적 책무를 지도록 하는 것이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입법 운동의 목표였다.

처음에는 「초·중등교육법」을 개정하여 그 안에 학생인권에 관한 내용을 담으려는 노력이 이어졌다. 2006년, 민주노동당 최순영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은 자율보충학습 금지, 두발복장규제 금지, 체벌 금지, 차별 금지 등을 담았고, 학생회의 자치권과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참여를 보장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그러나 이 최초의 학생인권법안은 국회 논의 끝에 원안은 대부분 잘려나갔고,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이 추가(2007년 12월)되는 데 그쳐야 했다. 이후 2008년에 민주노동당 권영길 국회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법안을 재발의했지만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이 법 개정은 학생인권을 제도화하려는 최초의 시도였다는 의의가 있으며, 제18조의4의 신설은 「초·중등교육법」에 학교의 학생인권 보장 의무를 담았다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실제로 학교 현장과 우리 사회에서의 논쟁과 갈등은 학생인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학교가 이를 보장하기 위해 무슨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를 둘러싸고 벌어지고 있다. 침해해선 안 되는, 실현해야 하는 학생인권의 내용이 무엇인지, 학교와 교육당국은 무슨 일을 해야 하는지 내용이 없는 이 조문은 현실에서 힘을 발휘하기 어려웠다. 그럼에도 이러한 노력이 있었기에 학생인권조례도 만들어질 수 있었다는 점은 간과해선 안 될 것이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은 2006년 광주에서 처음 시민사회단체들에 의해 추진되었고, 2008년에도 경남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 운동이 있었다. 그러다가 학생인권조례 제정 실현이 가시권에 들어온 것은 교육감 직선제 실시와 소위 ‘진보 교육감’의 출현에 힘입어서였다. 경기도에서는 2009년, 김상곤 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제정자문위원회를 꾸리고 연구를 의뢰해 교육청 차원의 학생인권조례안을 최초로 내놓았다. 이 조례안은 1기 때는 통과되지 못했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 김상곤 교육감이 재선하고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의회 다수를 점한 이후에야 통과될 수 있었다. 경기도에서 첫발을 댄 이후로는 광주광역시, 서울특별시, 전라북도에서 총 4개 광역지자체에서 2013년까지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됐다. 그리고 다섯 번째 학생인권조례는 2020년 충남에서, 여섯 번째는 2021년 제주특별자치도에서 만들어졌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의 성과는 명백하다. 학생인권조례가 시행되면서, 거의 아무런 제재 장치가 없던 학교의 학생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통제와 개입이 이뤄지기 시작했다. 상징적이고 대표적인 문제인 두발규제나 체벌 같은 경우, 2010년 이전까지는 각종 실태조사에서 중고등학생 80% 이상이 두발규제나 체벌을 심하게 경험한다고 응답하곤 했다. 그러다가 2010년대에 들어 두발규제나 체벌의 경험률은 크게 떨어지고, 폭력과 규율의 정도와 강도도 약해졌다.(물론 체벌의 감소는 서울시교육청의 체벌금지 선언,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아동복지법」 개정 등이 더 큰 영향을 미쳤다.) 학생인권조례는 우리 사회의 상식과 감각을 크게 변화시켰는데, 200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중고등학생들은 남학생이라면 반삭 내지는 이른바 ‘상고머리’를 하고 여학생이라면 단발머리나 묶은 긴 머리만을 하는 게 흔한 풍경이었던 것이다.

국가인권위 조사 등에서는 학생인권조례 시행 지역에서 인권침해가 유의미하게 빈도가 적다는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다. 박환보(2021)는 학생인권조례 시행 지역과 미시행 지역의 학생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통해, 인권침해적 학교 환경(교사의 폭력, 개인정보 공개, 용의복장검사 및 소지품검사 등)을 줄이는 데에 대해 유의미한 차이를 낳고 있다고 분석했다.²⁾

2) 박환보(2021), 학생인권조례 시행이 학교의 인권환경 조성에 미치는 영향 분석, 《교육사회학연구》, 31(1).

| |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의 '그렇다'는 응답률 | 학생인권조례가 있는 지역의 '그렇다'는 응답률 | 차이 |
|-------------------|------------------------------|------------------------------|--------|
| 두발 길이나 모양 제한 경험 | 66.1% | 39.6% | 26.5%p |
| 면티/양말 색깔 제한 경험 | 32.2% | 17.5% | 14.7%p |
| 치마/바지 길이, 폭 제한 경험 | 68.7% | 55.4% | 13.3%p |
| 화장/미용제품 제한 경험 | 71.8% | 62.1% | 9.7%p |
| 수업외시간 핸드폰 제한 경험 | 84.0% | 74.4% | 9.6%p |
| 동의 없는 소지품 검사 경험 | 23.2% | 11.5% | 11.7%p |
| 직접 체벌 경험 | 32.4% | 23.5% | 8.9%p |
| 간접 체벌 경험 | 40.6% | 30.5% | 10.1%p |
| 강제성 서약서, 동의서 경험 | 24.4% | 14.7% | 9.7%p |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 수행, <학교생활에서 학생의 인권보장 실태조사>(2016년 12월) 내용 중에서 발췌. 전국 중고생 6100명 대상 설문조사 결과.

반면, 학생인권조례의 한계도 명확하다. 학생인권조례가 비록 미시행 지역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치긴 했지만, 조례는 특정 지역의 자치법규이기 때문에 그 지역을 넘어서서는 직접적으로 적용되지 않는다. 인천 지역 학생들이 두발규제에 대해 항의하자 교사가 (바로 10분 거리인) '싫으면 경기도 부천으로 이사 가라'라고 했다는 일화는, 인권이 보편적으로 보장되지 않을 때의 블랙코미디를 보여 준다.

일각에서는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학생인권이 과도하게 보장된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학생인권조례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도 확인되고 있다. 가령 2020년 발표된 서울시교육청의 <제2차 서울 학생인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체에 대한 폭력'(구타형 체벌)이 발생한다는 응답률('전혀 발생하지 않는다' 외의 응답)도 초등학생 16.9%, 중학생 28.6%, 고등학생 22%에 이른다. '간접체벌'(강요형 체벌)의 경우는 중학생은 21.0%, 고등학생은 9.9%가 '자주/가끔 발생한다'고 응답한 것 역시 심각하다. 같은 조사에서 '머리모양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묻은 것에는, '그런 편이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응답한 비율은 중학생 중 57.3%, 고등학생 중 52.0%에 그쳤다. '복장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지' 묻은 문항에서는 이 비율은 중학생 52.1%, 고등학생 58.3%였다. 또한 종교계 학교에서 해당 사항이 있는 중학생 중 30.5%, 고등학생 중 45.1%가 종교 시간에 참석을 원치 않아도 대안을 요청할 수 없다고('전혀 그렇지 않다' + '그렇지 않은 편이다') 답했다.

최근 벌어지는 학생인권조례 폐지 또는 후퇴 움직임은, 물론 인권에 대한 무지와 오해, 차별 의식, 극우적 신념에 의해 추동되고 있지만, 학생인권조례의 또 다른 한계를 간접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다. 학생인권조례에 의해 학생인권 보장이 특정 지역, 특정

교육감, 특정 학교의 것으로만 여겨지면서 학생인권은 우리 사회에 당연한 상식이자 원칙으로 자리 잡지 못했고 특정 진영만의 것, (인권 보장을 원하는 학생들에게) 행운의 산물, (학생들을 '잡길' 원하는 사람들에게) 원성의 대상 정도로 격하되었다. 학생권이 보장되는 학교가 모든 지역, 모든 학교의 타이틀이 되지 못할 때, 학생권은 계속 비교-대조의 대상이자 분란의 씨앗처럼 여겨진다. 학교 현장에서 머리를 잡을 거냐 말 거냐, 교복 위에 외투를 허가할 거냐 말 거냐, 휴대전화를 압수할 거냐 말 거냐 같은 논란이 지속되어 피로감이 높아졌다. 학생권조례는 학교 현장에서 인지도가 높지도 않고 학생들에게 학생권을 보증하는 것처럼 느껴지지도 않음에도 끊임없이 진영논리적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다.

4 조례를 넘어 학생인권법이 필요한 시점

학생인권법은 이러한 조례의 한계를 넘기 위해, 그리고 학생인권조례가 부당하게 공격당하는 와중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학생인권법은 2006년 국회에서부터 논의되어온 역사가 깊은 제도적 대안이며, 2018년 교육부가 실시한 <학생인권보장을 위한 법제화 방향 및 이슈 탐색>이라는 연구 용역에서도 “A ‘아동·청소년인권법 제정’, B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법률 제정’, C ‘교육기본법 및 초·중등교육법 개정’, D ‘법률 중심의 초·중등교육법 개정’, E ‘조례 중심의(학생인권조례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이라는 다섯 가지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고 시민사회단체에서 주장하고 있는 학생인권법은 이 중에서 D와 E를 추진하려는 것이고, 길게 봐서는 학교 범위를 벗어난 A와 B 역시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는 학생인권법의 내용과 의의를 설명하고자 한다. 이 부분은 현재 국회에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국회의원 대표로 발의되어 있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을 기준으로 한다.

① 학생인권 침해 금지 및 학생인권조례 근거 강화

제17조(학생의 인권보장) ① 학생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 신체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양심의 자유, 종교의 자유,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 자치 및 참여의 권리 등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이 보장하고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제1항에 따른 학생인권 보장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제17조의2(학생인권 침해행위의 금지) 학교에서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1. 학생에 대하여 모욕을 주거나 신체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
2. 학생의 두발·복장을 검사하는 등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
3.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 등 개인의 사적 생활에 속하는 물품들을 검사, 압수하는 행위. 단,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을 위하여 긴급한 필요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4. 가정환경, 성적(成績), 외모, 성별, 국적, 종교, 장애, 사상·신념, 성적(性的)지향, 가족형태 또는 가족 상황, 임신 또는 출산, 징계 등 일체의 이유에 의한 차별행위 단, 저소득층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우대하는 조치는 예외로 한다.
5. 학생의 동의 없이 학생을 정규학습시간 외 교육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행위. 단, 법령이나 고시에 의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6. 양심에 반하는 내용의 서약을 강요하거나 종교행사 참여 및 종교과목 수업을 강요하는 행위
7. 성적 괴롭힘을 가하거나 유발하는 환경을 조성하는 행위, 그리고 성적 요구에 따른 이익이나 불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
8. 그 밖에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학생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판단하여 고시하는 행위

가장 먼저 학생인권법에서는 학교에서 가장 빈번하게 벌어지고 있고 명백히 사라져야 할 학생인권침해 행위들(체벌, 두발복장규제, 각종 차별, 보충·자율학습 강요, 종교 강요, 성추행 등)을 금지함을 명시하고 있다. 이는 학생인권의 구체적 내용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밝히는 것이 학생인권 침해를 근절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이다. 두발복장규제, 체벌과 언어폭력, 차별 행위, 자율·보충학습 강요, 종교 강요, 성폭력·성희롱 등 그동안 이슈화되어온 대표적 문제들을 학교가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고, 학교 현장에서의 학생인권 침해를 근절하는 데 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는 마치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에서 최저임금, 노동시간, 휴가, 차별, 부당노동행위, 직장 괴롭힘 등을 규정함으로써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인권침해 문제들을 억제한 것과 비견될 만하다.

② 인권을 침해하거나 하자가 있는 학교규칙의 시정

- 제8조(학교 규칙)** ① 학교의 장(학교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그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를 말한다)은 법령의 범위에서 학교 규칙(이하 "학칙"이라 한다)을 제정 또는 개정할 수 있다. 다만, 학칙 중 학생자치활동,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을 제정 또는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총학생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 ② 학교의 장은 학칙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고 하는 때에는 사전에 전체 학생을 비롯한 학교 구성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한다.
- ③ 학교의 장은 학칙이 제정되거나 개정된 때에는 이를 지도·감독기관(국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부장관, 공·사립학교인 경우에는 교육감을 말한다. 이하 "관할청"이라 한다)에 신고하여야 한다.
- ④ 관할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학칙의 변경을 명할 수 있다.
1. 학칙의 제·개정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
 2. 학칙의 내용이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인권을 침해하는 경우
 3. 기타 관계 법령 및 조례를 위반하는 경우
- ⑤ 학칙의 기재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법체계상 현재 「초·중등교육법」의 가장 큰 문제점은 학교에서 학교규칙 등에 의해 인권침해가 일어나더라도 이를 시정하고 제재할 수단이 전혀 없다는 점이다. 현행법은 학칙을 학교장(정확히는 기관으로서 학교)의 재량으로 두고 있고, 이에 대해 교육감이나

정부가 감독하거나, 문제가 있을 시 고치도록 할 절차나 권한을 전혀 두지 않고 있다. 이는 범죄가 발생해도 경찰이 개입하지 않고, 복지시설에서 인권침해가 일어나도 보건복지부도 지자체도 관여할 수 없으며, 최저임금 미지급 등이 일어나도 고용노동부·노동청이 구제하지 않는다는 말과 다를 바가 없다. 이런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 학생인권법안에서는 학교 규칙 제개정에 관해 여러 요건을 두고, 시도·감독기관이 문제가 있는 학칙을 시정할 수 있도록 했다.

③ 학생 자치 및 민주적 참여 보장

제17조의3(학생자치활동) ① 학생은 동아리, 소모임, 언론활동 등 자치활동을 할 권리를 가지며, 학교는 학생 자치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② 학생자치활동의 자율성과 독립성은 보장되어야 하며, 학생의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제17조의4(학생회) ① 학교에 학생들의 보통, 평등, 직접, 비밀선거에 의하여 구성되는 총학생회를 둔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학생회 운영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그 산하에 학년별·학급별 학생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총학생회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되는 학년별·학급별 학생회의 임원의 자격 기준을 정함에 있어 성적·성별·종교·징계 등에 의한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④ 총학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 심의·의결한다.

1. 학칙 중 학생자치활동, 학생생활과 관련된 사항의 제·개정안 발의
2. 건강·안전 등 학생복지 및 학교생활과 관련된 의견
3.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타 납부금의 징수 및 사용과 관련된 의견
4. 학교운영위원회의 학생위원 선출
5. 총학생회의 예산안 및 결산
6. 학생회칙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학칙에 의하여 총학생회의 심의·의결이 요구되는 사항

⑤ 총학생회가 심의·의결한 사항 중 학교의 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필요가 있는 사항은 학교의 장 또는 학교운영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 및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사항을 처리하여야 한다.

⑥ 학생회의 설립·운영 및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은 국립학교의 경우에는 교육부령으로, 공립·사립학교의 경우에는 시·도의 조례로 정하되, 구체적인 사항은 학생회칙으로 정한다.

제31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② 국립·공립 학교에 두는 학교운영위원회는 그 학교의 교원 대표, 학부모 대표, **학생 대표** 및 지역사회 인사로 구성한다.

앞서 학교 규칙에 관한 부분에서 학생회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조문이 있음을 볼 수 있다. 그런데 이런 조건이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학생회 등 학생자치활동에 자율성이 있어야 한다. 민주주의 사회에서 학교에도 민주주의가 작동하기 위해서는 학생자치와 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기도 하고, 또 이러한 권리는 중요한 학생인권이기도 하다. 따라서 학생인권법에서는 학생자치활동의 자율성, 독립성과 학교의 행재정적 지원 책무를 명시했고, 학생회가 학칙 제개정안 발의 등을 의결할 수 있으며, 학교운영위원회에 학생 대표가 참여할 수 있게 했다.

④ 교육청의 의무 명시, 구제 기구 설치

제18조의5(교육감의 책무) 교육감은 학생인권을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1. 인권교육 실시
2. 학생인권실태조사 실시
3.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
4. 학생인권 침해에 대한 적절한 전문상담 및 구제체계 구축
5. 학생인권정책 심의를 위한 민관합동 학생인권위원회 설치

제18조의6(학생인권옹호관 등의 설치·운영) ① 학생인권 침해 사안에 대한 조사 및 구제, 학생인권 증진 및 인권친화적 교육문화 조성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이하 “시·도”라 한다) 교육청에 학생인권옹호관을 둔다.

- ② 학생인권옹호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위하여 시·도 교육청에 학생인권센터를 둔다.
- ③ 제1항에 따른 학생인권옹호관 및 제2항에 따른 학생인권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제18조의7(학생인권 침해 구제신청) ① 학생이 학교에서 인권을 침해당하였거나 침해당할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학생을 비롯하여 누구든지 학생인권옹호관에게 그에 관한 구제신청을 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8조의8(학생인권 침해사건에 대한 조치) ①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 중이거나 조사가 끝난 사건에 대하여 사건의 공정한 해결을 위하여 필요한 구제 조치를 당사자에게 제시하고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② 학생인권옹호관이 사건을 조사한 결과 학생인권 침해가 일어났다고 판단할 때에는 가해자, 그 소속기관 또는 감독기관(이하 “소속기관 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1. 학생인권 침해행위의 중지
2. 원상회복, 손해배상 그 밖에 필요한 구제조치
3. 학생인권 침해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주의, 징계, 인권교육 등 적절한 조치
4. 동일하거나 유사한 학생인권 침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
5. 법령·제도·정책·관행의 시정 또는 개선

③ 학생인권옹호관은 조사 결과 사안이 중대하거나 재발의 방지를 위하여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하여는 학생인권위원회의 심의를 요청하여 그 결과를 받아 권고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권고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권고를 받은 소속기관등의 장은 그 권고의 내용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이유를 학생인권옹호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⑥ 학생인권옹호관은 구제신청을 접수한 후에도 학생인권 침해가 계속될 염려가 있고, 이를 방지할 경우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구제신청에 대한 결정 이전에 피해자의 신청 또는 직권에 의하여 가해자, 그 소속기관 등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1. 학생인권 침해의 중지
2. 학생인권 침해를 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공무원 등을 그 직무에서 배제하는 조치
3. 그 밖에 피해자의 생명·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러한 학생인권이 적극적으로 실현되도록 하기 위해선 교육청의 책무를 포함해 구제절차나 관련 기구가 필요하다. 현재는 학생인권 침해가 일어나더라도 이에 대해 호소하거나 구제를 요청할 창구가 마땅치 않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과부하가 걸려 있고

학교에 실질적 영향을 미치지 못해 권고가 불수용되기 일쑤다.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지역에선 교육청에 민원을 낼 수밖에 없는데, 교육청 민원은 사실 민원 담당자가 적당히 답변만 하면 절차적으론 합법이고, 내용적으로도 학생인권의 입장을 반영하여 처리되는 경우가 드물다. 따라서 지역마다 노동청이 있고 근로감독관이 있듯이, 교육청마다 학생인권옹호관을 두고 인권침해에 대한 구제 역할을 하도록 한다. 나아가 교육감이 학생인권실태조사 실시, 학생인권종합계획 수립 등 학생인권 신장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고 있다.

이미 학생인권조례가 있는데 학생인권에 관한 법을 왜 또 만드느냐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된다. 그러나 학생인권조례는 일부 지역에만 있을뿐더러 그 실질적 영향력과 효력 면에서도 한계가 뚜렷하다.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는 오히려 너무 부족하다. 학생인권법이 왜 필요하냐는 항변은, 노동자들에게 「근로기준법」이 왜 필요하냐는 말만큼이나 단견이다. 오히려 학생인권법이 제안되고나서 15년이 넘는 시간 동안 왜 수백만 명의 학생들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국회와 정부의 응답이 없었는지를 물어야 마땅하다.

학생인권법이 만들어져야 하는 이유는 학교의 자율성보다 학생의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이 우선하기 때문이다. 교육 활동은 학생의 인권을 존중하고 지키는 속에서 이뤄져야 하기 때문이다. 국회와 정부에 인권 보장의 책무가 있기 때문이다. 학생인권법은 학생을 위한 「헌법」이고 「근로기준법」이며 「가정폭력특별법」이다. 학생인권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학교에도 민주주의와 인권이 당연한 상식으로 뿌리내려야 한다고 믿는다면 학생인권법의 입법에 힘을 보태주시길 바란다.

토 론
01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현황과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킴이
공동대책위원회'의 대응활동

- ▶ 장대진(서울학생인권조례지킴이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현황과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킴이 공동대책위원회'의 대응활동

장대진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킴이 공동대책위원회 집행위원)

1 서울학생인권조례, 탄생부터 폐지조례안 상정까지¹⁾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는 2011년 5월 20일, 「지방자치법」 제15조(법률 제10219호, 현 같은 법 제19조)에 따라 ‘학생인권 조례 제정 서울본부’가 서울시교육감에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정 청구」를 접수하였고(8만5천498명), 이후 추가 서명을 제출하여 2011년 8월 3일 주민청구 조례안에 대한 법정 인원이 충족되어(9만7천702명) 최종 수리되었습니다. 2011년 12월 19일 서울시의회에서 가결 되었으나 서울시교육감의 재의요구 및 재의요구 철회를 거쳐 2012년 1월 26일 서울특별시 조례 제5247호로 제정되어 서울학생들의 인권을 지키고, 서울교사 및 서울시민들에게 서울학생인권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해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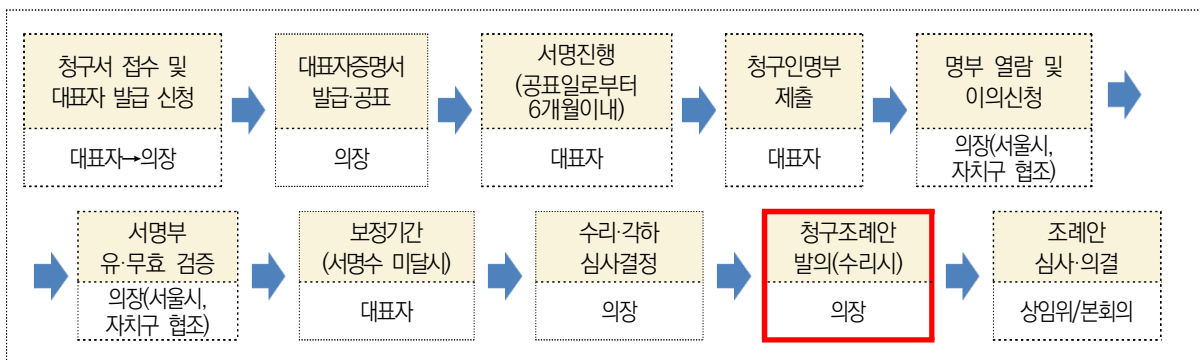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가 제정된 이후, 일부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 및 보수 학부모 단체 등을 중심으로 ‘교육과학기술부 장관과 서울특별시교육감 간의 권한 쟁의(헌법재판소 2013.9.26. 선고 2012헌라1 결정)’, ‘제정 조례안 의결 무효확인 청구의 소(대법원 2013.11.28. 선고 2012추15 판결)’, ‘서울시 학생인권 조례 무효확인 청구(서울행정법원 2018.9.14. 선고 2017구합88640 판결)’,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3조제1항 등 위헌확인’ 헌법소원(헌법재판소 2019.11.28. 선고 2017헌마1356 결정), ‘학생인권센터 예산지원 증지 등 주민소송(서울행정법원 2021.5.27. 선고 2020구합6446 판결)’ 등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에 제동을 거는 시도가 지속적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서울행정법원에서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의 정당성을 법적으로 확인시켜주어 이후 10여년 동안 존속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보수적인 기독교 단체 및 보수 학부모 단체 등은 조례의 효력을 무력화시키려는 법적 소송이 실패하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1)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검토보고서(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2023.4.25.’에서 부분 발췌 및 수정

폐지를 위한 주민조례청구 방식을 택하였고, 2021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한 청구서를 서울시의회에 접수하였습니다. 2023년 3월 13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은 이를 발의하여 2023년 3월 15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4월 25일 제318회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이 상정되었으나, 위원회에서는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한 관계로 좀 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여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은 심사보류된 상태입니다.

〈주민 조례 청구 처리 절차〉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는 교육감이나 시의회가 아닌 서울주민에 의해 발의된 최초의 학생인권조례이자, 「서울」이 갖는 상징성을 고려할 때 자칫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가 다른 지역에 미칠 악영향이 우려되기에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의 시민들의 관심과 지지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학생인권조례 시행 현황〉

| 자치법규명 | 시행일 | 제안자 | 주요특이사항 |
|---------------|------------|---------|-----------------------------------------------------------------------------|
|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 2010.10.5. | 경기도교육감 | - 전국 처음으로 제정된 학생인권 조례 - 학생인권조항, 학생인권기구, 학생인권 권리구제 등 학생인권조례의 기본적인 틀을 마련함. |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 | 2012.1.1 | 광주광역시의회 | -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에서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조례로 명칭 변경 (2020.4.1.개정) |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 2012.1.26. | 주민발의 | - 교육감이나 시의회가 아닌 주민에 의하여 발의된 조례 - 학생인권조례 외에도 학생인권옹호관 조례를 별도 제정 |

| 자치법규명 | 시행일 | 제안자 | 주요특이사항 |
|---------------------------|------------|---------------------|--------------------------------------------------------------------------------|
| 전라북도 학생인권 조례 | 2013.7.12 | 전라북도의회 | - 제8조(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에서 차별금지사유를 조례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고, '국가인권위원회 법 제2조 제3호의 차별행위'로 규정함. |
|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 2020.7.10. | 충청남도의회 | - 학교 내 학교학생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제31조). |
| 제주특별자치도 교육청 학생인권 조례 | 2021.1.8. | 제주특별자치도의 회 교육위원장 | - 논란이 많은 조항을 제외하거나 축소(임신 및 출산, 성소수자 등을 사유로 한 차별, 개성을 실현할 권리의 제한적 보장) |
| 인천광역시 학교구성원 인권증진 조례 | 2021.9.1 | 인천광역시 교육감 | - 학생인권 뿐만 아니라 교직원, 보호자까지 모두 포함한 '학교구성원'을 대상을 함. |

2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의 대응활동

2021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에 관한 청구서가 서울시의회에 접수되어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가 존폐 위기에 처하게 되자, 2023년 1월 26일 어린이-청소년들의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 뜻을 함께 하는 서울의 모든 학생, 학부모, 교사 및 시민들과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를 지키는 범시민 운동을 전개해나가기 위해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을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에서 갖고 260여개 단체가 참여하는 '서울학생인권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가 공식적으로 출범하였습니다.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주요 활동〉

| 순번 | 날짜 | 장소 | 활동 내용 |
|----|-------------|----------------|-------------------------------------------------------------------------------------------------------|
| 1 | 2023.01.26. | 서울시교육청 정문 앞 | -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공동대책위원회 출범 기자회견 |
| 2 | 2023.01.31 | 온라인 | - '유엔 인권이사회의 특별절차 진정에 대한 서한 회신' 관련 공동 논평 |
| 3 | 2023.02.10. | 서울시의회 본관 앞 | - '청소년들이 말한다. 학생인권조례 폐지? 우리에게 물어는 봤는가?' 서울학생인권 조례 폐지 반대를 위한 청소년 기자회견 - 서울학생인권조례의 당사자인 청소년이 준비하고 진행 |

| 순번 | 날짜 | 장소 | 활동 내용 |
|--------------------------------------------------------------------------------------------------------------|----------------------------------------|----------------------|-----------------------------------------------------------------------------------------------|
| 4 | 2023.02.13. ~ 02.20. | 온라인 | - 서울시의회 국민의 힘 시의원 대상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문자 보내기 대응 활동 |
| 제316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2023.02.20. ~ 2023.03.10. | | | |
| 5 | 2023.02.20. | 서울시의회 본관 앞 | -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키기 폐지, 축소 반대' 기자회견 |
| 6 | 2023.02.21. ~ 03.10. 11:30~12:30 | 서울시의회 본관 및 의원회관 앞 | - 거리 선전전(피켓 시위) - 연대 단체를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진행 |
| 7 | 2023.02.22 | (온라인) EBS 뉴스브리치 | - "학생인권조례 후퇴 안돼" 청소년의 눈으로 본 학생인권 조례 (안병석 상임대표) |
| 8 | 2023.03.02. | 전교조 서울지부 사무실 | - 민변 변호사와 함께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 주민청구 조례안 수리행위에 대한 법적 검토 -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인권 증진 조례안' 분석 간담회 |
| 9 | 2023.03.04. | 세종로 일대 | - 여성의 날 행사 중 학생인권조례폐지 반대 선전전 진행 |
| 10 | 2023.03.07. | (온라인) B TV 서울뉴스 | - 학생인권조례폐지 반대 인터뷰 (강혜승 집행위원장) |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시의회 의장 직권 발의(2023.3.13.)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회부(2023.3.15.) | | | |
| 11 | 2023.03.20 | 온라인 | - '서울시의회에 말한다.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가 국제적 망신이다' 연대 성명 |
| 12 | 2023.04.04. | 서울시의회 본관 앞 | - '서울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수리는 위법이다' 기자회견 |
| 제317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2023.04.05. ~ 2023.04.10. | | | |
| 13 | 2023.04.05. | 서울행정법원 | -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수리 및 발의 처분 무효 확인의 소' 접수 |
| 14 | 2023.04.06. ~ | 온라인 등 | - 법적 대응 소소비용 모금을 위한 소송지원단 모집 |
| 제318회 서울특별시의회(임시회) 2023.04.14. ~ 2023.05.03. | | | |
| 15 | 2023.04.14. ~ 05.03. 11:30~12:30 | 서울시의회 본관 앞 | - 거리 선전전(피켓 시위) - 연대 단체를 중심으로 신청을 받아 진행 |
| 16 | 2023.04.14. ~ 05.03. | 온라인 | - 서울시의회 국민의 힘 시의원 대상 학생인권조례 폐지 반대 문자 보내기 대응 활동 |

| 순번 | 날짜 | 장소 | 활동 내용 |
|----|-------------|-------------|------------------------------------------------|
| 17 | 2023.04.18. | 강민정 국회의원실 | - 5.19 토론회(학생들이 직접 말하는 학생인권 토론회) 기획 회의 |
| 18 | 2023.05.05. | 금천구민 문화체육센터 | - 지역과 연계한 어린이날 '서울학생인권지킴이 캠페인' - 서명전도 함께 진행 |
| 19 | 2023.05.19. | 국회의원회관 | - '우리에게 물어는 봤는가' 학생들이 직접 말하는 학생 인권토론회 |

이상과 같이 '서울학생인권조례지킴이 공동대책위원회'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를 지키기 위한 여러 활동들을 쉼 없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가 존속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토 론
02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및
시민사회 대응 현황

▶ 박기남(충남인권교육협의회 공동대표)

충남 학생인권조례 폐지 및 시민사회 대응 현황

박기남 충남인권교육협의회 공동대표

청구일자 2015.01.01 ~ 2023.03.28
 자치단체 전체
 전체
 인권
 검색

전체(10)
 청구서 제출
 서명(1)
 청구인명부 제출(4)
 열람·이의 접수
 보정
 심의
 청구종료(5)

총 10건 10건

사용자 매뉴얼 청구서 등록

| 번호 | 자치단체 | 구분 | 조례명 | 서명기간 | 전자서명 신청여부 | 진행상태 |
|----|-----------|----|-----------------------------------------------------|-------------------------|-----------|----------|
| 10 | 강원도 | 제정 | 강원도학생인권조례 | 2022.10.24 ~ 2023.04.23 | 신청 | 서명중 |
| 9 | 충청남도 | 폐지 |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 | 2022.08.26 ~ 2023.02.25 | 신청 | 청구인명부 제출 |
| 8 | 충청남도 | 폐지 |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 | 2022.08.26 ~ 2023.02.25 | 신청 | 청구인명부 제출 |
| 7 | 대전광역시 대덕구 | 개정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 ... | 2022.04.21 ~ 2022.08.03 | 신청 | 청구인명부 제출 |
| 6 | 서울특별시 | 폐지 | 서울특별시학생인권조례 | 2022.01.05 ~ 2022.08.10 | 신청 | 청구인명부 제출 |
| 5 | 경기도 부천시 | 폐지 |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조례 폐지 | 2022.01.03 ~ 2022.04.25 | 신청 | 청구종료 |
| 4 | 대전광역시 | 제정 | 대전시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 조례 | 2021.06.14 ~ 2021.12.13 | 신청 | 청구종료 |
| 3 | 경기도 부천시 | 폐지 | 부천시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 2020.10.22 ~ 2021.01.21 | 신청 | 청구종료 |
| 2 | 충청북도 청주시 | 폐지 | 청주시 청소년 노동인권보호 및 증진 조례 폐지 | 2019.12.10 ~ 2020.03.09 | 신청 | 청구종료 |
| 1 | 경상남도 | 폐지 | 경상남도 인권 보장 조례 폐지 | 2019.11.13 ~ 2020.05.26 | 신청 | 청구종료 |

청구인명부 제출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

| 자치단체 | 청구일 | 서명기간 | 주민총수 | 필요 서명수 | 전자 서명수 | 청구인의 대표자 |
|------|------------|-------------|-----------|--------|--------|----------|
| 충청남도 | 2022.08.22 | ~2023.02.25 | 1,802,291 | 12,016 | 442 | 안준호 |

청구서 제출
서명중
● **청구인명부 제출**
연말·이의 접수중
보정중
심의중
청구 종료

청구취지 주소복사

1. 공표청구사유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함

2. 공표주요내용

○ 청구사유

- 충남인권조례의 가장 큰 문제는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남인권조례가 추구하고자 하는 인권 목록이 2014년에 만들어진 충남도민선언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1조(차별금지)에는 도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다양한 가족형태, 사상, 전과 차별금지'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인권선언 제17조(이주민)는 외국인의 이슬람 문화를 도청이 보장할 책무를 갖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유럽의 무슬림 증가에 의한 테러, 범죄 사건의 증가로 인한 사회불안정을 생각해보면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헌법의 정교분리 위배의 소지가 있습니다.
- 인권 조례가 목표로 삼을 권리 목록을 도정은 도의회와 승인없이 공표했는데, 당일에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 본인들도 절고려워 했다는 인상을 줍니다.

청구인명부 제출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

| 자치단체 | 청구일 | 서명기간 | 주민총수 | 필요 서명수 | 전자 서명수 | 청구인의 대표자 |
|------|------------|-------------|-----------|--------|--------|----------|
| 충청남도 | 2022.08.22 | ~2023.02.25 | 1,802,291 | 12,016 | 815 | 안준호 |

청구서 제출
서명중
● **청구인명부 제출**
연말·이의 접수중
보정중
심의중
청구 종료

청구취지 주소복사

1. 공표청구사유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 하고자 함

2. 공표주요내용

○ 청구사유

- 헌법과 교육관련 법률에서 교육은 '전문성과 자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고원 자격증도 없는 교육에 전문성이 없는 도의원들이 비교육적이며, 반헌법적인 조례를 만들어 다음 세대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고, 부모와 교사에게 순종적이지 못하게 만드는 행태는 부모로서, 신앙인으로서 용납할 수 없다.
-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위반하여 교육의 비전문가들인 도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학생들을 개조하려고 만든 나쁜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을 폐지하라!!
- "담배, 술, 음란물 등 지도가 곤란하고 동성섹스, 임신, 출산을 조장하고 교사, 부모 고발을 조장하며, 교실산란, 학력저하를 조장하는 비교육적인 나쁜 학생인권조례안을 폐지하라!!

3. 공표청구개요

- 청구개요
- 청구일: 2022. 8. 22.(월)
- 대표자: 안준호(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 대표자증명서발급일: 2022. 8. 26.(금)
- 청구취지공표일: 2022. 8. 26.(금)
- 서명기간: 2022. 8. 26.(금) ~ 2023. 2. 25.(토)

충청남도조례 제 호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 폐지 조례안

충청남도 학생인권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3. 공표청구개요

- 청구개요
- 청구일: 2022. 8. 22.(월)
- 대표자: 안준호(충청남도 천안시 서북구 광장로)
- 대표자증명서발급일: 2022. 8. 26.(금)
- 청구취지공표일: 2022. 8. 26.(금)
- 서명기간: 2022. 8. 26.(금) ~ 2023. 2. 25.(토)

충청남도조례 제 호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 폐지 조례안

충청남도 인권 기본 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청구사유

- 헌법과 교육관련 법률에서 교육은 '전문성과 자주성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학부모의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고 되어 있음에도 교원 자격증도 없는 교육에 전문성이 없는 도의원들이 비교육적이며, 반헌법적인 조례를 만들어 다음 세대의 성장 잠재력을 개발하지 못하게 하고, 부모와 교사에게 순종적이지 못하게 만드는 행태는 부모로서, 신앙인으로서 용납할수 없다.
- 헌법과 법률의 정신을 위반하여 교육의 비전문가들인 도의원들이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으로 학생들을 개조하려고 만든 나쁜 충남학생인권조례안을 폐지하라!!
- "담배, 술, 음란물 등 지도가 곤란하고 동성섹스, 임신, 출산을 조장하고 교사, 부모 고발을 조장하며, 교실산만, 학력저하를 조장하는 비교육적인 나쁜 학생인권조례안을 폐지하라!!

○ 청구 사유

- 충남인권조례의 가장 큰 문제는 잘못된 인권 개념을 추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충남인권조례가 추구하고자 하는 인권 목록이 2014년에 만들어진 충남도민선언에 나열되어 있습니다. 제1조(차별 금지)에는 도민들이 동의하기 어려운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다양한 가족형태, 사상, 전과 차별금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인권선언 제17조(이주민)는 외국인의 이슬람 문화를 도청이 보장할 책무를 갖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어 유럽의 무슬림 증가에 의한 테러, 범죄 사건의 증가로 인한 사회불안정을 생각해보면 도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또한 헌법의 정교분리 위배의 소지가 있습니다.
- 인권 조례가 목표로 삼을 권리 목록을 도청은 도의회의 승인없이 공표했는데, 당일에도 내용은 공개하지 않아 본인들도 꺼끄러워 했다는 인상을 줍니다.

아산시 공고 제 2018 - 00호

**「아산시 인권 기본조례」
 폐지 청구의 청구인명부 제출사항 공표**

「아산시 인권 기본조례」 폐지 청구와 관련한
 청구인명부 제출사항 등을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표합니다.

다 음

- 청구대표자 성명 : 곽민정
- 주 소 : 충남 아산시 어의정로 46 은천마을아파트 104-208
- 청구종류 : 지방자치법 제15조에 따른 「아산시 인권 기본조례」의 폐지 청구
- 연서주민수 : 13,286명(읍면동별 연서주민수 별첨4 참고)
- 청구인명부 열람기간 : 2018. 01.02. ~ 01.15.(10일간)
- 청구인명부 열람장소 : 아산시청 자치행정과, 읍면동사무소
- 이의신청 방법 : 별첨5 서식에 의한(이메일, 팩스, 방문 등 서면신청)
 * 이메일 kw2658@korea.kr/ 팩스 041-540-2116/ 시 자치행정과 방문
 (문의 : 자치행정과 행정팀 041-536-8687)

- 붙 임 : 1. 청구개요 및 청구이유
 2. 아산시 인권 기본조례 폐지조례안
 3. 아산시 인권 기본조례
 4. 청구인명부 열람장소 및 연서주민수
 5. 이의신청서 서식

2018년 01월 02일

아산시장

I. 청구개요

- 청구자 : 국민청
- 청구일 : 2017.09.05
- 서명요청기간 : 2017.09.20. ~ 12.19 (3개월)
- 청구내용 : 아산시 인권 기본조례 폐지

II. 청구 이유

○ 아산시 인권 기본조례는 ① 문제가 많다고 지적되고 있는 국가 인권위원회의 권고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② 동성에 옹호 국가인권위원회 등의 인권의 정의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으며 ③ 교육과 구현에서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④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의 개념에 반대하는 시민으로서 용납하기 어렵습니다. 또한 아산시 조례가 따라야하는 상위 조례인 충남인권조례는 ⑤ 「충청남도 인권 선언문 제1조에서 동성에 뿐만 아니라 남자가 여자화장실에 들어갈 권리를 보장 하라는 성별정체성 차별금지도 담고 있으며 ⑥ 제17조에는 이슬람으로 추정되는 외국인의 종교문화의 구현을 도청이 보장할 책무가 있다는 등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도 있어 조례 폐지를 청구합니다.

② 아산시 인권 기본조례 폐지조례안

아산시 조례 제 호

아산시 인권 기본조례 폐지조례안

아산시 인권 기본조례를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전 문

우리는 인간에게 존엄함과 동등한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충남지역에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인류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자유롭고 평등하며, 행복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선언한다.

불의와 억압에 저항하며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 했던 선조들의 의병운동과 동학농민 혁명의 정신을 이어받고, 민족의 자주독립에 헌신했던 우리 지역의 자랑스러운 역사를 계승 발전시킴으로써, 인류애와 정의의 가치가 실현되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우리 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권리들을 누릴 수 있도록 제도와 문화를 개선하고, 인간 존엄의 가치가 뿌리내릴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이를 위해 국적, 인종, 성, 연령, 장애, 경제적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한 그 어떠한 차별도 단호히 거부한다. 특히 사회적 약자, 소수자 존중은 관용과 연대의 우리 공동체를 실현하는데 필수불가결한 요소를 천명한다.

날로 심각해져 가는 지역의 생태와 환경의 위기를 극복하고, 삶의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 요소들을 제거해 나감은 물론, 인도주의 정신과 인권적 가치에 바탕을 둔 올바른 교육 환경과 풍토를 만들어 나갈 것이다. 자유로운 예술창작과 문화 활동을 보장하여 주민의 삶이 날로 풍요로워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이다.

인권이 꽃피어 나는 세상을 만들기 위하여, 도민의 민주적 참여와 대화를 통해 '충남도민 인권선언문'을 선포한다. 이는 인간의 보편적 권리를 가꾸고 지키려는 지역적 노력의 차원을 넘어, 전 인류를 향한 지역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의무와 연대를 실천하고자 하는 충남도민의 고귀한 약속을 담고 있다.

우리 모두의 지혜와 역량과 의지를 모아, 충청남도의 모든 주민들이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한 길로 힘차게 나아가자.

제1장 인권보장의 기본원칙




제1조 차별금지 원칙

- ① 충청도민은 성별, 나이, 외모, 장애, 인종, 종교, 병력(病歷), 사상, 신념, 출신 및 거주지역, 결혼여부, 가족구성, 학력, 재산,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국적, 전과(前科), 임신, 출산 등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
- ② 충청남도는 모든 차별행위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도민의 인권을 보장한다.

제2조 민주적 참여 원칙

- ① 충청도민은 충청남도의 주인으로서 행정정보에 대해 알 권리를 가지며, 충청 남도에 대해 설명을 요구하고,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 ② 충청남도는 정보공개를 충실하게 하고, 충청남도의 정책결정과정, 예산편성 과정에 도민의 참여를 보장할 책무가 있다.



제5장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

제13조 어린이, 청소년

- ① 충청남도의 어린이, 청소년은 건강하고 안전하며 차별 없이 성장할 권리를 갖는다.
- ② 충청남도는 어린이, 청소년이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고, 교육받을 권리, 알 권리, 문화, 복지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며 도정에 참여할 기회를 마련할 책무를 갖는다.

제14조 여성

- ① 충청남도의 여성은 나이, 외모, 결혼여부 및 출산, 장애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고 모든 영역에서 자유롭게 활동할 권리를 갖는다.
- ② 충청남도는 여성이 가정, 직장, 일상에서의 성폭력을 포함한 모든 폭력으로 부터 자유로울 수 있도록 정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여성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지원할 책무를 갖는다.

제15조 장애인

- ① 충청남도의 장애인은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자신과 관련된 모든 정책 및 프로그램의 의사결정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권리를 보장 받는다.
- ② 충청남도는 장애인의 장애유형과 일상생활에 맞는 공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지원 가능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할 책무를 갖는다.

제16조 노인

- ① 충청남도의 노인은 빈곤과 외로움으로부터 자유롭게 노후를 살아갈 권리를 갖는다.
- ② 충청남도는 노인이 존엄을 지키며 건강하고 안전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서비스와 지원을 할 책무를 갖는다.

제17조 이주민

- ① 충청남도의 이주민은 국적에 관계없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 ② 충청남도는 이주민이 인종, 국적, 성별, 언어, 종교, 체류 자격 등을 이유로 차별 받지 않으며, 자신의 문화와 정체성을 지킬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할 책무를 갖는다.

제18조 북한이탈주민

- ① 충청남도에 사는 북한이탈주민은 차별 없이 인간답게 생활할 권리를 갖는다.
- ② 충청남도는 북한을 떠나 국내에 살고자 하는 사람이 주거, 교육, 직업 등 차별 없이 살아갈 수 있도록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한다.

제19조 그 외 소수자

충청남도는 앞에 나온 사회적 소수자뿐만 아니라 드러나지 않거나 자신의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소수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책무를 갖는다.

제20조 그 외의 권리

이 선언에서 명시된 권리 외에 도민이 가지는 권리는 모두 동등한 가치로 존중되어야 하며, 이 선언에서 명시되지 않음을 이유로 경시되어서는 안 된다.

법률자문서

자문내용

1. 개요

2017. 4. 16. 오○○님이 청구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이하 '이 사건 조례'라고 함)에 대한 조례 폐지 청구(이하 '이 사건 조례 폐지 청구'라고 함)는 다음과 같은 요지를 담고 있습니다. 아래에서는 이와 같은 이 사건 조례 폐지 청구가 타당한지, 지방자치법 제15조제2항각호에 규정된 사항을 청구대상으로 하고 있지는 않은지 검토하고자 합니다.

의뢰하신 다음 자문사항에 대하여 별지와 같이 자문합니다.

- 자문1항: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 청구 이유의 타당성 여부
- 자문2항: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폐지 청구가 「지방자치법」 제15조 제2항 각호에 규정된 청구 제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 주요이유(요지)

- 이 사건 조례는 '충남도민 인권선언'을 실행하기 위한 것인데, 위 선언 제1조는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전과」 등을 어떠한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바, 성적지향은 동성결혼을 용호하고 일부일처제의 근간을 무너뜨리고, 성별정체성은 자연적 성별인 남자와 여자의 구별을 부정하여 양성평등이 아닌 성평등을 확산시키게 되므로 폐지를 청구

청구 이유(요지)

- 충남인권조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협력관계를 유지하고 있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그동안 동성애를 용호하는 정책을 시행하여 우리나라는 AIDS 위험국가가 되었음
- 충남도민 인권선언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을 차별하지 말 것을 선언하고 있어 자라나는 청소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동성애는 자라나는 청소년들에게 많은 혼란과 무질서를 야기함.
- 충남 인권조례에는 헌법 제37조 제2항과 같은 제한 사항이 없어 인권교육 등을 명분으로 잘못된 사상과 가치관을 가르칠 수 있음
- 인권의 보장은 기존의 법률과 조례로 충분함

2017. 9. 12.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조혜인 변호사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은 대한민국헌법, 국가인권위원회법, 국제인권조약 등에서 보편적으로 인정되는 차별금지 사유입니다. 국가 및 지자체는 위 규범들에 따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포함한 국민의 기본권 및 인권을 실현해야 할 책무를 갖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10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제6조 1 헌법에 의하여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국내법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2. 이 규약의 당사국은 이 규약에서 선언된 권리들이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행사되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한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2조 1.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자국의 영토 내에 있으며, 그 관할권 하에 있는 모든 개인에 대하여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에 의한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없이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존중하고 확보할 것을 약속한다.

2. 이 규약의 각 당사국은 현행의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에 의하여 아직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이 규약에서 인정되는 권리들을 실현하기 위하여 필요한 입법조치 또는 기타 조치를 취하기 위하여 자국의 헌법상의 절차 및 이 규약의 규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다.

제26조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고 어떠한 차별도 없이 법의 평등한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이를 위하여 법률은 모든 차별을 금지하고, 인종, 피부색, 성, 언어, 종교, 정치적, 또는 기타의 의견, 민족적 또는 사회적 출신, 재산, 출생 또는 기타의 신분 등의 어떠한 이유에 의한 차별에 대하여도 평등하고 효과적인 보호를 모든 사람에게 보장한다.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5헌마213 서울시민 인권현장 폐가행위 위헌확인
청 구 인 정○석
대리인 법무법인 이공
담당변호사 허진민, 곽경란
피 청 구 인 서울특별시청
결 정 일 2015. 3. 31.

주 문
이 유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1. 사건 개요

서울특별시의회는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는 정책을 수립·집행하기 위하여 2012. 9. 28.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367호)를 제정하였고, 이에 따라 '서울시민 인권현장'을 제정하기 위하여 150명의 시민위원과 30명의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서울시민 인권현장제정 시민위원회'(이하 시민위원회라 함

다.)가 2014. 8. 6. 출범하였다. '서울시민 인권현장'은 시민위원회에서 초안을 마련한 후 내부 토론 및 권역별 토론회를 거쳐 세계인권선언의 날인 2014. 12. 10.자로 반포될 예정이었다.

시민위원회가 작성한 서울시민 인권현장 초안에 '서울시민은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라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알려지자, 2014. 10.초경부터 일부 시민단체와 종교지도자들 중심으로 이를 반대하는 여론이 일어나게 되었고, 2014. 11. 20. 서울특별시청 서소문본관에서 열린 서울시민 인권현장 시민공청회가 무산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시민위원회는 2014. 11. 28. 회의를 열어, 출석한 시민위원 중 일부가 퇴장한 가운데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사유로 명시하는 안을 표결에 붙여 통과시켰다.

이후 피청구인은 2014. 11. 30. 기자회견을 통하여, 서울시가 2014. 11. 28. 시민위원회를 열어 서울시민 인권현장 문안을 확정하려 하였으나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하였으므로, 당초 2014. 12. 10.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맞춰 서울시민 인권현장을 발표하려는 계획도 무산되었다고 선언하였다(이하 '이 사건 무산 선언'이라 한다).

이에 청구인은, 자신이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성소수자로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을 명시적으로 금지하는 서울시민 인권선언이 제정되면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누릴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청구인의 이 사건 무산 선언으로 인하여 청구인의 인격권·행복추구권·평등권·종교의 자유가 침해되고 정교분리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하면서, 2015. 3. 2.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본문은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은 자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로 인하여 헌법상 보장된 자신의 기본권을 현재 직접적으로 침해당한 자만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는 뜻이므로,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헌법소원을 청구하고자 하는 자의 법적 지위에 아무런 영향이 미치지 않는다면 애당초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나 위험성이 없으므로 이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을 청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헌재 1999. 6. 24. 97헌마315 등 참조).

살피건대, 2012. 9. 28. 제정된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서울특별시조례 제5367호)에 의하면 위 조례는 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집행하기 위하여(제1조), 피청구인으로 하여금 관련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인권정책 수립에 있어 시민의 참여를 최대한 보장하도록 하고 있고(제4조 제1항, 제2항), 이에 따라 '서울시민 인권현장'을 제정하여 선포하도록 하고 있다(제12조).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인권'이라 함은 헌법과 법률이 규정하고 있거나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의미하는 것으로서(제2조 제1호) 서울시민 인권현장에 의하여 비로소 창설되거나 소멸되는 것은 아니고, 이 사건 '현장'이라 함은 서울시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증진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가 지향해야 할 정책적 방향을 함축적으로 선언하는 내용에 해당된다.

위와 같은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청구인이 선포하려던 서울시민 인권현장

은 피청구인이 서울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울시민에 대한 인권 보호 및 증진을 위한 기본방향을 밝히고자 한 정책계획안으로서 그 법적 성격은 국민의 권리·의무나 법적 지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비구속적 행정계획안이라 할 것이고, 이 사건 무산 선언은 당초 2014. 12. 10. 세계인권선언의 날에 맞춰 선포하려던 서울시민 인권현장이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에 대한 이견으로 합의에 실패하여 예정된 날짜에 선포될 수 없었음을 알리는 행위로서 그 자체로는 직접적으로 청구인의 법적 지위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무산 선언은 헌법소원심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한다(헌재 1999. 9. 2. 89헌마170 참조).

3.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2호에 따라 이를 각하한다.

| | | |
|-----|-----|-----|
| 재판장 | 재판관 | 이정미 |
| | 재판관 | 김창중 |
| | 재판관 | 서기석 |

2017헌바250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종국일자 2017. 6. 27. 종국결과 각하(4호)

현재 2017. 6. 27. 2017헌바250, 결정문

인권 go 조례 go

**헌 법 재 판 소
제2지정재판부
결 정**

사 건 2017헌바250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0조 제1항 위헌소원

청 구 인 한○배

당 해 사 건 광주고등법원 2017누3617 학생**인권조례** 제20조1항 성적지향 용어법령위반

결 정 일 2017. 6. 27.

주 문

이 사건 심판청구를 각하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청구인은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20조 제1항이 '성적지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법령에 위반된다는 이유로 소를 제기하였고, 위 사건은 광주고등법원에 계속 중이다(광주고등법원 2017누3617). 청구인은 위

1

사건 계속 중 당해사건 법원에 위 **조례** 제20조 제1항의 '성적지향'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광주고등법원 2017011), 2017. 6. 9. 당해사건 법원으로 부터 법률조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이 아니라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받았다.

청구인은 2017. 6. 17.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따라 위 **조례** 제20조 제1항 중 '성적지향' 부분에 대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이 사건 심판대상은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1. 10. 28. 광주광역시**조례** 제4017호로 제정된 것) 제20조 제1항 중 '성적지향'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광주광역시 학생**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2011. 10. 28. 광주광역시**조례** 제4017호로 제정된 것)

제20조(차별 받지 않을 권리) ① 학생은 성별, 종교, 민족, 언어, 나이, 성적지향, 신체조건, 경제적 여건, 성적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고 평등한 대우와 배움을 누릴 권리를 가진다.

3. 판단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때에 당사자가 위헌제청신청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이 이를 배척하였을 경우에 법원의 제청에 갈음하여 당사자가 직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의 형태로써 심판청구를 하는 것이므로, 그 심판의 대상은 재판의 전제가 되

2

는 형식적 의미의 법률 및 그와 동일한 효력을 가진 명령이고 대통령령, 부령, 규칙 또는 **조례** 등을 대상으로 한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청구는 부적법하다(헌재 2007. 7. 26. [2005헌바100](#) 참조).

이 사건 심판청구는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대한 것이므로 부적법하다.

4. 결론

이 사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72조 제3항 제4호에 의하여 이를 각하하기로 하여 재판관 전원 의견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
|-----|-----|-----|
| 재판장 | 재판관 | 김이수 |
| | 재판관 | 안창호 |
| | 재판관 | 조용호 |

2017헌마1356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사건)
종국일자 2019. 11. 28. 종국결과 기각, 각하
현재 2019. 11. 28. 2017헌마1356, 공보 278, 1379

#조례 #선언조항 #기본권침해가능성 #수법자 #자기관련성 #청구기간 #조직규범 #직접성 #표현의 자유 #혐오 #혐오표현 #법률유보원칙 #과잉금지원칙

> 인권 go 조례 go

서울시 학생인권조례 제3조 제1항 등 위헌확인
[2019. 11. 28. 2017헌마1356]

【판시사항】

가. 학교 운영자나 학교의 장, 교사, 학생 등(이하 '학교 구성원'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성별, 종교,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국가, 출신민족, 언어, 장애, 용모 등 신체조건,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인종, 경제적 지위, 피부색,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병력, 징계, 성적 등의 사유(이하 '성별 등의 사유'라 한다)를 이유로 한 차별적 언사나 행동, 혐오적 표현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2017. 9. 21. 서울특별시조례 제6608호로 개정된 것, 이하 '이 사건 조례'라 한다) 제5조 제3항이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학교 구성원인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조례 제5조 제3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학교 구성원인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제5조 제3항은 법률유보원칙에 위배되어 학교 구성원인 청구인들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참조판례】

현재 1994. 6. 30. 91헌마162, 판례집 6-1, 672, 676
현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현재 2004. 4. 29. 2003헌마484, 판례집 16-1, 574, 583
현재 2011. 10. 25. 2010헌마661, 판례집 23-2하, 101, 117
가. 현재 1995. 4. 20. 92헌마264등, 판례집 7-1, 564, 572
나. 현재 1989. 9. 4. 88헌마22, 판례집 1, 176, 188 현재 1992. 11. 12. 89헌마88, 판례집 4, 739, 756 현재 2009. 5. 28. 2006헌바109등, 판례집 21-1하, 545, 560 현재 2010. 2. 25. 2008헌마324등, 판례집 22-1상, 347, 363 현재 2012. 11. 29. 2011헌바137, 판례집 24-2하, 141, 152 현재 2013. 6. 27. 2012헌바37, 판례집 25-1, 506, 509-510

【당 사 자】


청 구 인[별지1] 청구인 명단과 같음
대리인 법무법인 저스티스담당변호사 지영준 외 3인

【주 문】

청구인 1 내지 14의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2017. 9. 21. 서울특별시조례 제6608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3항에 대한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인 1 내지 14의 나머지 심판청구와 청구인 15 내지 23의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010헌마66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등 위헌확인 (외국인 근로자 고용 업무의 대행기관 지정요건에 관한 사건)
 종국일사 2011. 10. 25. 중국결과 기각, 각하
 헌재 2011. 10. 25. 2010헌마661, 판례집 23-2쪽, 101

#외국인 근로자 #대행기관 #지정요건 #행정사 #법무법인 #사립유 #직업성 #자기관련성 #제3자 #보통성 #직업수행의 자유 #공정공직관직 #신뢰보호원칙 #행정권 #처리기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의2 등 위헌확인

(2011. 10. 25. 2010헌마661)

【판시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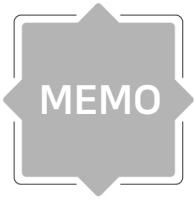
1. 법령의 구체화를 위하여 하위규범의 시행을 예정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2010. 6. 4. 법률 제10339호로 개정된 것) 제27조의2(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 및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10. 7. 12. 고용노동부령 제10호로 개정된 것) 제18조의2 제1항, 제4항(이하 '이 사건 시행규칙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대행기관 지정요건에 관한 규정인 '고용허가제 대행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2010. 8. 4.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0-7호) 제4조 및 별표1 대행기관 지정요건(제4조 관련)(이하 '이 사건 고시 조항'이라 한다)에 대하여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에 관한 업무를 대행기관에게 위탁하려는 사업주들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3. 이 사건 고시 조항이 과잉금지원칙 및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여 기존에 대행 업무를 수행하던 행정사 등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4. 이 사건 고시 조항이 기존에 대행 업무를 수행하던 행정사 등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 구분 | 청구대상 | 청구자 | 제한사항 | 확정순 |
|---------------|-----------------------------------------|----------------------------------------------------------------------------------------------------------------------|--------------------------------------------|-----------------------------|
|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 법령위반, 지방세 부과, 행정기 구 공공시설설치 등 제외 | 19세 이상주민(조례로 규정) 시도.50만 이상 대도시: 1/100~1/70 시군구: 1/50~1/20 범위내 서명 | 선거기간 중 서명요청 금지 (공직선거법 33) | 지방의회 부의 후 의결 |
| 주민감사청구 | 지방자치단체 및 단체장의 권한 사무가 법령 위반, 공익을 저해 할 경우 | 19세 이상주민 시도 500명, 시군구 200 명 미만의 조례로 정하는 주민 수 이상의 연서 | 사무처리일부터 2년 경과시 제기불가 | 감사 실시 (60일 이내) |
| 주민소송 | 주민감사 청구 후 위법한 재무 회계 행위에 대해 단체장 대상 | 감사청구를 경유한 주민이 90일 이내 행정법원에 소송제기 요건인 경우에 한해 주민 소송 제기(이 경우 1인 소송 가능) 청구 수리 후 60일 내 감사 미 종결.감사결과 조치요구 미 이행 또는 이행조치 불복 등 | | 법원 결정 및 심리 후 판결 (3심제) |
| 주민소환 | 선출직 지방공직자 (비례대표자 제외) | 19세이상주민 시도지사(10/100), 시.군수(15/100), 지방의원(20/100) 이상 서명 | | 투표권자 총수의 1/3이상 투표 (미달시 미개표) |
| 주민투표 | 자치단체 주요 결정사항 (국가사무 등 제외) | 19세 이상 주민(조례로 규정) 의회, 단체 장 주민청구시 청구권자 총 수의 1/20~1/5 범위내 서명 | 선거일전 60일~선거일까지 서명불가, 주민투표일 지정불가 소환사유 제한 없음 | 유효투표수 과반수 득표시 확정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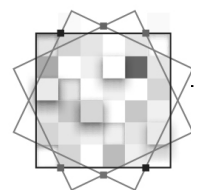
위기충남공동행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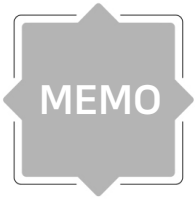
- 국가 차원의 지방정부 인권 행정 체계 구축
- 부문을 포괄해 혐오 차별에 대응하는 일상적 인권교육 운동
- 인권 지표, 인권 통계 구축 및 공유
- 지속가능한 장기 대응 체계, 법률 및 조례 제개정폐지 기준과 원칙
: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성인지예산, 환경영향평가, 인권영향평가 등....
 - 지속가능한 발전(SDGs)
 - 탄소중립, 정의로운 전환, 인권에 기반한 원칙

고맙습니다.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A series of horizontal dotted lines for writing, spanning the width of the page.

